



2020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 요약

I. 서론

1. 배경
2. 목적
3. 조사 개요

II. 관련 법 및 규정

1. 동물보호법
2.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III.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

1.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2. 입소 시 검사
3.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4.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5. 2018년 예산 집행 및 2019년 예산 현황 - 치료비를 중심으로
6. 개체관리카드

IV.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1. 조사 결과
2. 평가

V. 민간 보호소 운영 사례 :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1.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ON)
2. 시사점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0 요약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반려인구 천 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을 만큼 반려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견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유기동물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사건·사고들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충격과 분노, 상처를 안겨주고는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히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해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상황 속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의 자연사’에 주목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입소·관리되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예산 및 인력 부족의 문제로 동물 보호와 관리 소홀이 오랜 시간에 걸쳐 문제가 되어왔다. 각종 언론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가 안전한 보호의 공간이 아닌 ‘죽음의 수용소’라는 부정적 보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우리 사회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난 10여 년 간 차디 찬 보호소에서 고통 속에 방치된 채 죽음에 이르는 동물 역시 끊임 없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용소와 다름없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주소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를 대상으로 자연사 및 동물 치료 현황을 조사, 분석함과 동시에 동물들이 실제 관리되고 있는 보호소 현장을 일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해 이를 바탕으로 보호소 환경 및 보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현황 조사 결과 보호소에 입소되는 동물들은 육안검사 및 촉진검사 정도로 입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이마저 전혀 시행하지 않는 보호소도 다수 존재했다. 또한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호소 내 자연사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도 상당수 존재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 및 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했다. 전염성 질병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가 다른 개체와 동일한 철장 안에서 관리되거나 동물의 사체가 다른 개체들과 함께 방치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견됐다. 또한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에서 수 십 마리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 시설 내부 전반적인 위생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호소도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내 고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부 검사 및 치료 제공 의무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1. 배경

우리 사회는 고질적인 유기동물 문제를 안고 있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들이 무려 10만 마리가 넘게 발생되나 매년 급증하는 모든 유기동물들을 수용할 보호 시설은 전국 298개소¹⁾에 불과하고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예산 및 인력 또한 입소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보호 동물이 고통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올해 2월 서울·경기 지역 최대 규모 유기동물 보호소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에서 대표적 전염성 질병 중 하나인 파보 바이러스가 유행해 작년 최소 32마리의 유기견이 파보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²⁾ 작년 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동구협으로부터 동물 및 환경 시료를 임의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시료 10점 중 9점에서 파보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격리실 소독 작업 후 두 달 뒤인 12월 보호소 내부 바이러스 오염도를 재차 검사한 결과 분변 및 환경 시료의 70%가 여전히 파보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도가 높은 보호소 특성 상 파보, 홍역 등 치사율 높은 전염성 질병이 발견됐을 경우 개체 간 전염을 막고 시설 내부에 도사리는 바이러스의 근본적 제거를 위한 조치들이 다방면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부 격리 시설 및 운영 인력의 미비로 보호소 내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던 안타까운 사례였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 보호 및 관리 부실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어 왔다. 보호소에서 자연사하는 동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 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차디 찬 보호소에서 고통 속에 방치된 채 죽음에 이르는 동물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한 해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공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과연 동물의 보호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병이나 상해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놓인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보고자 한다.

A. 유기동물 현황과 문제점

(1) 유실·유기동물 보호형태

지난 10년 간 유기동물 발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처리 방향도 점차 변화해왔다. 2008년 발생한 유기동물은 자연사율 15.9%, 안락사율 30.9%로 보호소의 수많은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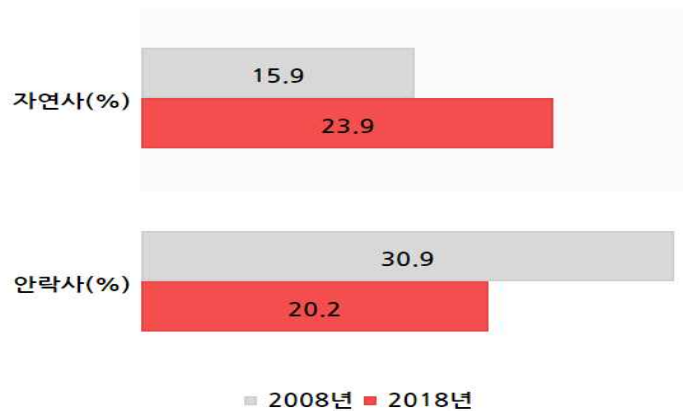
1)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19.07.23.). 한 지자체에서 직영보호소와 위탁보호소를 모두 운영하거나 여러 위탁보호소를 운영, 또는 동물구조관리협회와 같이 한 보호소에서 여러 지자체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도 있어 조사 대상 지자체 수와 보호소 수 사이 차이 발생

2) 「[영상+] '치사율 80%' 바이러스 퍼진 보호소...개들은 '구조' 받았나?」(2019.08.22.), 『한겨레』

들이 공고 기간 만료 및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안락사 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보호소 내 안락사 비율은 2005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자연사율 23.9%, 안락사율 20.2%로 안락사에 비해 오히려 자연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동물이 과거에 비해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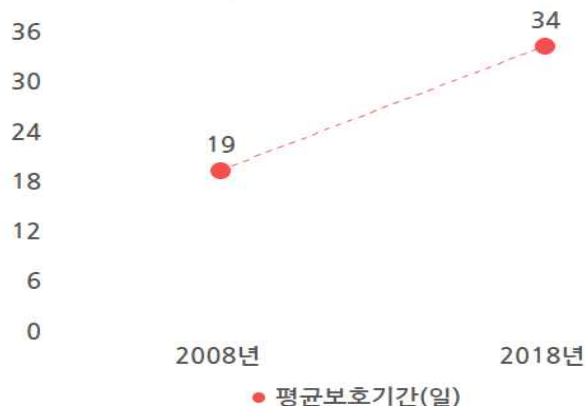
[그림 1] 유실 · 유기동물 보호형태 - 자연사, 안락사를 중심으로



(2) 유기동물 보호소 평균보호기간

2008년 평균 19일 정도로 나타나던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평균보호기간은 2018년 무려 34일로 늘어난다. 오늘날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은 평균적으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유실 · 유기동물 보호형태와 보호소 평균보호기간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점차 안락사율은 낮아지는 반면 자연스럽게 보호기간은 연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유기동물 보호소의 평균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호소에서 머무는 동물들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보다 가족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그림 2] 유기동물 보호소 평균보호기간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유기동물 안락사 감소를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올해부터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시행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킬 (No-Kill) 정책을 기반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노킬 정책의 확산과 보호기간의 확대로 안락사는 피했으나 입양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보호환경과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호동물의 고통만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그동안 반환, 안락사, 입양 등의 통계수치만 존재할 뿐 보호소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목적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접수된 유기동물의 수는 2008년 77,877마리, 2018년 121,077마리로 최근 10년 사이 무려 4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증가했다. 매년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은 포획·구조 과정을 거쳐 전국 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보호 동물의 관리와 치료 부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어왔고,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보호 동물이 고통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명칭과 달리 많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생명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지켜주지 못한 채 수많은 생명이 고통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를 대상으로 자연사 및 동물 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함과 동시에 동물들이 관리되고 있는 보호소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및 보호의 질을 높여 보호 중인 동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다지려 한다.

본 보고서는 국내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입소동물 치료 의무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3. 조사 개요

동물자유연대는 자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

경 및 보호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 동물의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 ·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 222곳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 보호소 내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등 보호 동물의 자연사 관련 정보와 입소 시 기본 검사/치료 및 건강관리 항목, 자연사 대상 개체관리카드와 2018~2019년 보호소 예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연사 개체 수 또는 자연사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의심되는 6개 지역 10개 유기동물 보호소와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 수범사례가 될 만한 보호소 1곳을 방문하여 관찰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A. 조사 기간 및 대상

(1) 조사 기간

- a. 정보공개 청구 및 데이터 분석 : 2019년 3 ~ 5월(1차) / 8 ~ 9월(2차)
- b. 현장조사 : 2019년 7 ~ 8월

(2) 조사 대상

- a. 정보공개 청구 및 데이터 분석 : 전국 지자체 222곳 (보호소 시비 운영되는 경우 시 · 도 대상)
- b. 현장조사 : 7개 지역 11개 보호소 (1개 지역 1개 보호소는 수범 운영 시설로 인터뷰 조사를 위하여 현장 방문)
- c. 선정 기준
 - A그룹 : 타 지역에 비해 자연사 두수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높은 자연사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급격히 자연사율이 증가한 경우
 - B그룹 :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적절한 동물 치료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표 1] 현장조사대상 유기동물 보호소

그룹	지역	보호소
A그룹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A 보호소
	인천 계양구	B 동물병원
	경기 평택	C 보호소
	울산 남구	D 동물병원, E 동물병원, F 동물병원, G 보호소
	부산 기장군	H 동물병원
	경남 김해	I 보호소
	경북 경산	J 보호소
B그룹	세종	K 동물병원

B. 조사 방법 및 내용

(1) 정보공개 청구 및 데이터 분석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2018년 보호 상황별 개체 수(자연사/안락사/총 개체 수), 안락사 및 자연사 원인, 입소 시 기본 검사/치료 및 건강관리 항목, 2018년 보호 동물 중 자연사 대상 개체 관리카드, 2018-2019년 예산 항목 및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최초 청구 후 공개자료 내용이 미비하거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지자체에 한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 · 분석했다.

[표 2]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조사표

보호 상황별 개체 수				
자연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리
안락사	※ 입소동물 총 개체 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현황 파악			
총 개체 수				
안락사 원인				
전염성질환				
회복불가/고통경감				
공격성/행동장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리
공고기간 종료				
기타				

자연사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리

미상

기타

입소 시 기본 검사 및 치료 항목

기본 검사 항목

(예)키트검사, 혈액검사 등

치료 항목

(예)감기, 피부병, 골절 등

응급치료 여부 및 조치 항목

응급치료 여부

예 / 아니오

(응급치료 여부 '예'인 경우)

응급 조치 항목

보호 중 기초건강관리 여부 및 내용

기초건강관리 여부

예 / 아니오

(건강관리 여부 '예'인 경우)

건강관리 내용

(2) 현장조사

전국 지자체 대상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현장조사 장소로 선정된 7개 지역 11개 유기동물 보호소를 대상으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2인 1조로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했다. 조사는 입소 동물 보호 환경 확인 및 보호 동물 대상 검사/치료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 정보를 습득했다. 보호소 수범사례로 조사한 세종시의 경우 담당 주무관 및 보호소 운영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별도 진행했다.

[표 3]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질문표

질문항목

Q1. 입소 시 기본 검사 및 치료 항목

ex) 키트 검사, 혈액 검사 / 감기, 폐렴, 골절 등

Q2. 응급치료 조치 항목

ex) X-ray, 저체온증 치료, 산소 케이지, 심폐소생술 등

Q3. 보호 동물 기초건강관리 내용

ex) 백신, 심장사상충, 구충, 위생을 위한 미용 등

Q4. 입소 동물 주요 특징

ex) 입소 시 건강상태 등

Q5. 동물 간 전염성 질병 관리 여부

예 / 아니오

Q6. 보호소 환경 및 입소 동물 관리 상황

(사진)

II 관련 법 및 규정

유실 ·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구조하여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유실 · 유기동물의 보호와 보호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배치 및 질병 관리 등 보호 동물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실질적 기준 조항은 모두 권고조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 동물보호법

전국 지자체가 갖는 유실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의무와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운영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한다.

지자체는 유실 · 유기동물 보호 시 보호조치 사실에 대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동법 제7조에 따라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히 치료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공고기간이 종료된 유기동물의 '소유자'인 관할 지자체 또한 해당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A. 법 제14조(동물의 구조 · 보호) 제1항

시 ·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동법 제7조(적정한 사육 · 관리) 제2항

: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1항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도와 시·군·구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

2.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동물 보호 및 관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행정규칙은 동물보호법 제22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의거하여 규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은 동물의 보호조치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되어있지만 관련 조항별 한계도 존재한다.

A. 규칙 제11조(센터 입소 절차) 제1항

센터의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체별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

3. 예산 범위 내에서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 실시. 다만,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4.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류하여 수용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다른 개체에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개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 의무 작성과 건강검진, 격리 수용 등 입소 절차에 대한 조항이다. 그러나 파보, 디스템퍼(홍역)와 같이 치사율 높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개체에 대한 격리 수용이 의무로 규정된 반면 그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B. 규칙 제12조(위생관리)

① 개체의 털에 묻은 이물에 의한 기생충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체 분류 후 격리실로 이동하여 목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동물수용시설을 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때는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이 소독제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의 차원에서 동물이 수용되는 시설 내부를 일 1회 이상 청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기생충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 시 목욕을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C. 규칙 제14조(예방접종 및 구충)

①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접종을 실시하고 구충제를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6주령 이상인 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 광견병(Rabies), Distemper(CDV), Adenovirus-2(CAV-2/hepatitis), Pavovirus(CPV), Parainfluenza(CPIV), Leptospira

③ 8주령 이상인 고양이의 경우에는 광견병, 범백혈구 감소증 및 허피스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보호동물의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이다. 특히 개체 간 밀집도가 높고, 보호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전염성 질환(파보, 홍역, 범백 등)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침상으로는 예방접종도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D. 규칙 제16조(치료우선 순위)

센터 운영자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는 우선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깊은 외상이나 중증 질병을 입은 보호동물이 응급치료를 통한 고통의 경감이 필요함에도 치료우선 순위가 밀려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 규칙 제17조(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제1항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자 등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은 개체는 즉시 격리조치할 것

전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감염을 진단받은 개체에 대한 즉시 격리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개체에 대한 즉시 격리조치는 의무사항이나 그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III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입소되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육안검사 및 촉진검사 수준의 간소한 기본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이마저 전혀 시행하지 않는 보호소도 다수 존재했다. 보호동물의 전염병 전파 예방에 있어 첫 걸음인 전염성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키트 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보호동물의 치료 수준에 있어서도 지자체 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치료 제공에 적극적인 지자체 보호소의 경우 기본적인 대증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시 다양한 과목별 치료가 제공됐다. 반면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어떠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도 존재했다. 지자체 별 관리방법 및 의료제공의 수준과 보호동물의 자연사율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동물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요구된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를 반영하듯 올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 개보수로 인한 예산 증가로 보호동물을 위한 치료비 항목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A. 조사 결과

[표 4] 2015-2018년 서울특별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강남구	104	21	6	15	11	157
강동구	115	38	3	4	27	187
강북구	정보부존재					232
강서구	정보부존재					223
관악구	정보부존재					494
광진구	정보부존재					230
구로구	정보부존재					96
금천구	67	22	3	0	1	93
노원구	18	26	10	0	128	182
도봉구	157	22	6	10	5	200
동대문구	217	0	0	0	0	217

동작구	정보부존재					107
마포구	286	211	3	42	10	552
서대문구	22	37	0	4	102	165
서초구	123	8	0	0	0	131
성동구	111	45	8	4	2	170
성북구	169	50	0	3	0	222
송파구	정보부존재					211
양천구	220	33	0	46	0	299
영등포구*	8	7	0	3	126	207
용산구	101	120	4	36	140	401
은평구	정보부존재					254
종로구*	21	13	0	2	180	259
중구	15	27	0	0	119	161
중랑구	0	0	0	255	0	255
합 계	1,754	680	43	424	851	5,705

*영등포,종로 : 2015년 자연사 원인별 개체수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표 5] 2015-2018년 부산광역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강서구	14	42	49	630	373	1,108
금정구*	83	90	2	347	20	1,118
기장군	125	141	3	703	0	972
남구	157	337	15	1	644	1,154
동구	189	80	0	155	0	424
동래구	135	192	7	669	0	1,003
부산진구	49	69	104	1,136	609	1,967
북구	정보부존재					988
사상구	정보부존재					1,337
사하구	15	35	43	1,025	278	1,396
서구	661	86	6	308	0	1,061
수영구	정보부존재					728
연제구	797	441	33	93	0	1,364
영도구	452	272	0	137	63	924
중구	237	52	8	169	1	467
해운대구	160	275	12	764	0	1,211
합 계	3,074	2,112	282	6,137	1,988	17,222

*금정 : 2015-2016년 자연사 원인별 개체수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표 6] 2015-2018년 대구광역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남구	272	148	4	64	39	527
달서구	0	335	18	0	703	1,056
달성군	401	125	0	137	91	754
동구	60	211	8	35	374	688
북구	0	257	0	523	0	780
서구	120	251	0	90	280	741
수성구	324	152	0	533	12	1,021
중구	0	0	0	194	0	194
합 계	1,177	1,479	30	1,576	1,499	5,761

[표 7] 2015-2018년 인천광역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강화군	59	29	0	8	187	283
계양구	336	181	72	525	0	1,114
남동구			정보부존재			1,507
동구			정보부존재			188
미추홀구	374	226	86	128	664	1,478
부평구	320	199	22	0	473	1,014
서구	122	156	0	147	275	700
연수구			정보부존재			826
옹진군	52	0	0	17	7	76
중구	22	29	0	640	4	695
합 계	1,285	820	180	1,465	1,610	7,881

[표 8] 2015-2018년 광주광역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328	502	15	3,571	255	4,671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체 응답

[표 9] 2015-2018년 대전광역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2,081	931	0	2,197	0	5,209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 응답

[표 10] 2015-2018년 울산광역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남구	1,659	52	8	16	0	1,735
동구	197	176	0	0	58	431
북구	199	45	1	0	0	245
울주군	108	50	0	455	0	613
중구	227	46	0	249	91	613
합 계	2,390	369	9	720	149	3,637

[표 11] 2015-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132	15	0	23	9	179

[표 12] 2015-2018년 강원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강릉시	319	27	2	0	23	371
고성군	22	1	0	5	0	28
동해시	52	17	0	117	0	186
삼척시	75	45	31	13	33	197
속초시	241	20	5	0	6	272
양구군	8	2	2	0	7	19
양양군	정보부존재					35
영월군	0	0	0	34	0	34
원주시	1,212	310	63	0	0	1,585
인제군	16	6	1	4	9	36
정선군	94	0	0	0	0	94
철원군	222	35	6	15	5	283
춘천시	20	11	0	415	0	446
태백시	0	0	0	55	0	55
평창군	7	17	0	0	0	24
홍천군	43	47	31	42	0	163
화천군	8	5	1	28	12	54
횡성군	153	45	10	0	0	208
합 계	2,492	588	152	728	95	4,090

[표 13] 2015-2018년 경기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가평군	4	0	0	38	0	42
고양시*			정보부존재			1,267
과천시	0	0	0	0	97	97
광명시	19	5	0	11	58	255
광주시	59	6	0	200	0	412
구리시			정보부존재			79
군포시			정보부존재			319
김포시	20	48	4	5	84	161
남양주시			정보부존재			1,592
동두천시	45	116	0	8	0	169
부천시	344	216	3	114	59	736
성남시			정보부존재			548
수원시			정보부존재			852
시흥시	116	12	0	321	261	834
안산시	615	3	0	335	336	1,235
안성시			정보부존재			632
안양시	61	32	0	142	128	435
양주시	93	31	6	3	1	169
양평군			정보부존재			482
여주시			정보부존재			530
연천군			정보부존재			113
오산시	105	73	36	55	0	269
용인시	15	73	0	14	5	583
의왕시			정보부존재			176
의정부시	71	18	7	7	0	103
이천시	0	0	0	922	0	922
파주시	0	205	0	0	0	205
평택시			정보부존재			1,415
포천시	87	47	2	329	43	508
하남시	0	0	0	363	0	363
화성시	483	43	3	126	16	672
합 계	2,137	928	61	2,993	1,088	16,175

*고양 : 2015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표 14] 2015-2018년 충청북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괴산군	20	3	0	10	0	33
단양군	12	0	0	12	0	24
보은군	9	3	1	4	11	28
영동군	67	127	0	0	0	194
옥천군	62	27	0	27	20	136
음성군	0	18	0	0	0	18
제천시	70	6	1	7	0	84
증평군	10	0	2	40	13	65
진천군	188	8	0	0	31	227
청주시	745	289	51	988	279	2,352
충주시	42	35	20	33	23	153
합 계	1,225	516	75	1,121	377	3,314

[표 15] 2015-2018년 충청남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계룡시	13	0	0	0	0	13
공주시	정보부존재					73
금산군	9	5	4	3	0	21
논산시	127	8	2	1	0	138
당진시**	250	0	0	0	0	250
보령시	38	30	0	85	0	153
부여군*	0	7	0	0	0	7
서산시	정보부존재					213
서천군*	0	11	0	37	2	50
아산시	정보부존재					390
예산군	24	13	0	0	9	46
천안시	31	61	0	76	241	409
청양군	2	0	0	8	5	15
태안군	정보부존재					15
홍성군	0	0	0	0	175	175
합 계	494	135	6	210	432	1,968

*부여, 서천 : 2015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당진 : 2015-2016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표 16] 2015-2018년 전라북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고창군	1	14	0	3	0	18
군산시	0	0	0	1,416	0	1,416
김제시	정보부존재					289
남원시	77	71	65	51	15	279
무주군	2	0	0	0	0	2
부안군	35	0	0	0	49	84
순창군	7	7	1	0	0	15
완주군	55	24	6	10	0	95
익산시	1,239	0	0	0	0	1,239
임실군	8	0	0	0	0	8
장수군	0	2	0	4	0	6
전주시	748	261	0	372	433	1,814
정읍시	151	43	0	6	26	226
진안군	0	0	0	0	0	0
합 계	2,323	422	72	1,862	523	5,491

[표 17] 2015-2018년 전라남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강진군*	0	0	0	95	0	95
고흥군			미답변			
곡성군	0	1	0	27	0	28
광양시	92	31	1	21	14	159
구례군	0	0	0	5	0	5
나주시	0	0	0	194	90	284
담양군	0	0	0	63	0	63
목포시	1,082	201	0	0	0	1,283
무안군	44	13	0	0	191	248
보성군	1	0	0	0	24	25
순천시	117	107	8	0	275	507
신안군**			정보부존재			78
여수시	44	14	2	99	44	203
영광군	14	0	26	0	0	40
영암군	56	10	7	0	64	137
완도군			미답변			
장성군	28	0	0	2	0	30
장흥군	0	1	0	6	1	8
진도군	7	0	1	1	0	9
함평군***	2	0	1	22	0	25
해남군	0	0	0	7	0	7
화순군			정보부존재			189
합 계	1,487	378	46	542	703	3,423

*강진 : 2015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신안 : 2015-2016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함평 : 2015-2017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표 18] 2015-2018년 경상북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경산시***	86	58	19	7	5	185
경주시	242	78	40	38	2	400
고령군	24	2	0	0	10	36
구미시	110	0	0	0	0	110
군위군	11	6	0	0	0	17
김천시	142	0	0	0	0	142
문경시	60	25	1	9	3	98
봉화군	0	2	0	0	0	2
상주시	45	250	0	54	0	349
성주군*	100	15	5	4	50	174
안동시	0	0	62	0	0	62
영덕군	32	0	0	97	0	129
영양군	0	0	0	3	0	3
영주시****	47	7	4	161	95	578
영천시	83	32	5	20	10	140
예천군	0	0	0	64	0	64
울릉군	0	0	0	1	0	1
울진군	1	5	1	7	2	16
의성군	0	1	1	0	3	5
청도군**	정보부존재					8
청송군	4	87	0	0	0	91
칠곡군	153	0	0	0	0	153
포항시	1,249	88	3	2	0	1,342
합 계	2,389	656	141	467	180	4,105

*성주 : 2015-2017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청도 : 2016-2018년 자연사 개체수 전체 정보부존재로 개체수 미포함
 ***경산 : 2015-2017년 자연사 원인별 개체수 정보부존재
 ****영주 : 2015-2016년 자연사 원인별 개체수 정보부존재

[표 19] 2015-2018년 경상남도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거제시	321	103	22	348	0	794
거창군	27	15	0	245	0	287
고성군	0	0	0	0	0	0
김해시	정보부존재					2,277
남해군	23	0	0	0	0	23
밀양시	969	149	122	125	0	1,365
사천시	2	1	16	687	0	706
산청군	0	0	0	0	110	110
양산시	0	0	0	177	0	177
의령군	8	1	5	2	5	21
진주시	19	0	0	36	0	55
창녕군	188	115	0	153	0	456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	290	5	10	0	0	305
창원시 의창·성산구	285	122	30	190	110	737
창원시진해구	310	67	32	34	1	444
통영시	59	39	1	0	250	349
하동군	50	17	0	111	0	178
함안군	257	11	0	134	0	402
함양군	5	5	10	0	6	26
합천군	20	60	10	6	105	201
합 계	2,833	710	258	2,248	587	8,913

[표 20] 2015-2018년 제주특별시 자연사 개체 수 및 원인

	병사	사고/상해	고령	미상	기타	총 개체수
서귀포시	35	83	0	5,053	0	5,171
제주시						

※ 유기동물 보호소 도비 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시 자체 응답

* 정보부존재 : 2015-2018년 자연사 원인별 개체수 정보부존재 (자연사 총 개체수만 확인 가능)

B. 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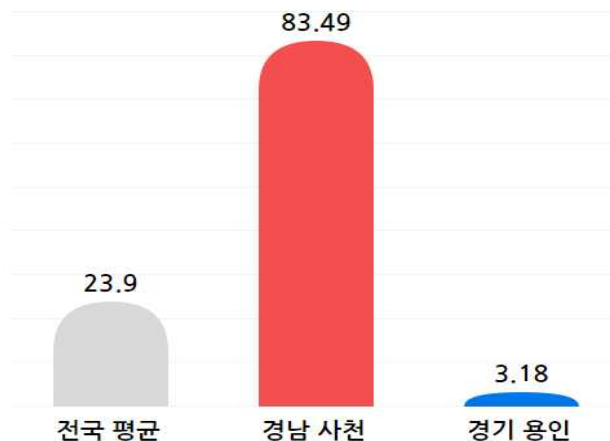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기동물 자연사 개체 수와 그 원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4년 간 보호소 내 전체 자연사 개체수는 102,915마리였고, 그 가운데 사망원인이 분류되어 있는 것은 82,013마리였다. 사망원인이 분류된 개체 중 고령에 의한 사망은 단 1.7%에 그쳤으며, 질병으로 인한 병사는 33.7%, 사고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은 13.8%에 달했다. 이를 통해 보호소 입소 전 혹은 입소 후 발병한 질환이나 외상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한 채 폐사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자체 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 미추홀구 및 남동구의 경우 지난 4년 간 매년 약 800두 안팎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연간 300두 이상이 자연사하고 있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2018년 자연사가 400두를 넘어서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는 매년 평균 1,500두 가량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락사는 연간 평균 10두 미만인 반면 자연사는 연간 평균 100두 이상으로 안락사에 비해 자연사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총 1,245마리 유기동물 중 안락사 22두, 자연사 596두가 발생한 전남 목포시, 총 1,381마리 유기동물 중 안락사 104두, 자연사 777두를 기록한 경남 김해시도 높은 자연사율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자체 중 하나이다.

반면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지난 4년 간 유기동물 수와 함께 입양 두수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락사 및 자연사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안락사는 150두, 자연사는 44두로 안락사 대비 자연사 비율은 1/3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림 3] 2018년 보호소 자연사율 비교

(단위 : %)



조사 결과 높은 자연사율을 나타낸 지자체 중 하나인 경남 사천시의 경우 2018년 자연사율은 무려 83.49%로, 보호소 입소 개체 10마리 중 8마리 이상이 자연사하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보호 동물에게 제공되는 기본 검사, (응급)치료, 건강관리 여부에 대한 답변에 모두 '해당 없음'을 응답했다. 반면 기본 검사와 함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경기 용인시의 경우 자연사율은 3.18%로 매우 낮았는데, 지자체 별 보호동물 치료 제공 수준의 차이와 함께 자연사율에서 확인되는 심한 편차를

통해 보호 동물의 자연사육과 동물 치료와의 상관관계 발견이 가능했다.

특히 자연사 원인 중 기타의 경우 식욕부진 또는 영양실조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처방 캔
급여 등 건강관리 제공을 통해 해당 원인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면에서 보호소 내 최소한의 돌봄
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 입소 시 기본 검사

A. 조사 결과

[표 21]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강남구	O	△	X	X	X	X	
강동구	O	O	△	△	X	X	
강북구	O	△	X	X	X	X	
강서구	O	△	X	X	X	X	
관악구	O	O	X	X	X	X	
광진구	O	△	X	X	X	X	
구로구	O	△	X	X	X	X	
금천구	O	△	X	X	X	X	
노원구	O	△	X	X	X	X	
도봉구	O	△	X	X	X	X	
동대문구	O	△	X	X	X	X	
동작구	O	X	X	X	X	X	
마포구	O	△	△	O	O	O	
서대문구	O	△	X	X	X	X	
서초구	O	X	X	X	X	X	
성동구	O	△	X	X	X	X	
성북구	O	△	X	X	X	X	
송파구	O	△	X	X	X	X	
양천구	O	X	X	X	X	X	
영등포구	O	△	X	X	X	X	
용산구	O	△	X	△	X	X	
은평구	O	△	X	X	X	X	

종로구	O	△	X	X	X	X
중구	O	△	X	X	X	X
중랑구	정보부존재					
합 계	24	2	0	1	1	1

[표 22]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강서구	O	△	X	X	X	X	
금정구	O	△	X	X	△	X	
기장군	O	△	X	X	△	X	
남구	O	△	X	X	△	X	
동구	O	X	X	X	X	X	
동래구	O	△	X	X	△	X	
부산진구	O	△	X	X	X	X	
북구	O	X	X	X	X	X	
사상구	O	△	X	X	X	X	
사하구	O	△	X	X	X	X	
서구	O	X	X	X	X	X	
수영구	O	△	X	X	△	X	
연제구	O	X	X	X	X	X	
영도구	X	X	X	X	X	X	
중구	O	X	X	X	X	X	
해운대구	O	△	X	X	△	X	
합 계	15	0	0	0	0	0	

[표 23] 대구광역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남구	O	O	X	X	X	X	
달서구	O	O	X	X	X	X	
달성군	O	O	X	X	X	X	
동구	O	O	X	X	X	X	
북구	O	O	X	X	X	X	
수성구	O	O	X	X	X	X	
서구	O	O	X	X	X	X	
중구	X	X	X	X	X	X	
합 계	7	7	0	0	0	0	

[표 24]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강화군	O	△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계양구	X	X	X	X	X	X	
남동구	O	O	X	△	X	X	
동구	X	X	X	X	X	X	
미추홀구	O	O	X	△	X	X	
부평구	O	△	X	△	X	X	
서구	O	△	X	X	X	X	
연수구	O	O	X	△	X	X	
옹진군	O	O	X	△	X	X	
중구	O	X	X	X	X	X	
합 계	8	4	0	0	0	0	

[표 25]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광산구	O	O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1년 이상개체만), 파보, 코로나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체 응답

[표 26] 대전광역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동구	O	△	X	X	X	X	키트-홍역, 파보, 코로나, 심장사상충, 범백 등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 응답

[표 27]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남구	X	X	X	X	X	X	
동구	O	O	X	X	X	X	
북구	O	△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울주군	O	△	X	X	X	X	
중구	O	O	X	△	X	X	키트-파보, 범백, 심장사상충
합 계	4	2	0	0	0	0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O	O	X	△	X	X	

[표 29] 강원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강릉시	O	O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파보, 홍역
고성군	X	X	X	X	X	X	
동해시	O	X	X	X	X	X	
삼척시	O	X	X	X	X	X	
속초시	X	X	X	X	X	X	
양구군	O	△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양양군				정보부존재			
영월군	O	X	X	X	X	X	
원주시	O	X	X	X	X	X	
인제군	O	X	X	X	X	X	
정선군	O	X	X	X	X	X	
철원군	X	X	X	X	X	X	
춘천시	O	△	X	△	X	X	
태백시	O	X	X	X	X	X	
평창군				정보부존재			
홍천군	O	O	X	X	X	X	
화천군	X	X	X	X	X	X	
횡성군	O	X	X	X	X	X	
합 계	12	2	0	0	0	0	

[표 30] 경기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가평군	O	O	X	X	X	X	
고양시	O	O	X	X	X	X	
과천시	X	X	X	X	X	X	
광명시	O	O	X	X	X	X	
광주시	O	O	X	X	X	X	
구리시	O	△	X	X	X	X	
군포시	X	X	X	X	X	X	
김포시	O	X	X	X	X	X	
남양주시	O	△	X	X	X	X	
동두천시	O	X	X	X	X	X	
부천시	O	△	X	X	X	△	
성남시	정보부존재						
수원시	O	△	△	△	X	X	
시흥시	O	O	X	X	X	X	
안산시	O	X	X	X	X	X	
안성시	O	O	X	O	X	X	
안양시	O	O	X	X	X	X	
양주시	O	△	X	X	X	X	
양평군	정보부존재						
여주시	O	O	X	X	X	X	
연천군	정보부존재						
오산시	O	X	△	X	X	△	
용인시	O	△	X	△	△	△	키트-심장사상충(성경), 파보,코로나등/치아검사
의왕시	X	X	X	X	X	X	
의정부시	O	X	X	X	X	X	
이천시	O	O	X	X	X	X	
파주시	정보부존재						
평택시	O	△	X	X	X	X	
포천시	O	X	X	X	X	X	
하남시	정보부존재						
화성시	O	X	X	X	X	X	추후 키트 및 혈액검사 추가 예정
합 계	23	9	0	1	0	0	

[표 31] 충청북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괴산군	O	O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파보
단양군	X	X	X	X	X	X	
보은군	O	X	X	X	X	X	
영동군	O	O	X	X	X	X	
옥천군	O	O	X	X	X	X	
음성군	O	X	X	X	X	X	
제천시	O	O	X	X	X	X	키트-고양이 (파보, 코로나)
증평군	O	X	X	X	X	X	
진천군	O	X	X	X	X	X	
청주시	O	△	X	X	X	X	
충주시	O	O	X	X	X	X	키트-파보, 코로나, 심장 사상충/기생충검사
합 계	10	5	0	0	0	0	

[표 32] 충청남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계룡시	O	X	X	X	X	X	
공주시				정보부존재			
금산군				정보부존재			
논산시	O	O	X	X	X	X	
당진시	O	O	X	X	X	X	
보령시	X	X	X	X	X	X	
부여군	O	O	X	X	X	X	
서산시	O	X	X	X	X	X	
서천군	X	X	X	X	X	X	
아산시	O	X	X	X	X	X	
예산군	O	△	△	X	X	X	
천안시	O	O	△	X	X	X	
청양군	X	X	X	X	X	X	
태안군				정보부존재			
홍성군	X	X	X	X	X	X	
합 계	8	4	0	0	0	0	

[표 33] 전라북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고창군	X	X	X	X	X	X	
군산시	X	X	X	O	X	X	
김제시	X	X	X	X	X	X	
남원시	O	X	X	X	X	X	
무주군	O	X	X	X	X	X	
부안군	O	△	X	X	X	X	
순창군	O	△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완주군	X	X	X	X	X	X	
익산시	O	O	X	X	X	X	
임실군	O	X	X	X	X	X	
장수군	O	X	X	X	X	X	
전주시	O	X	X	X	X	X	
정읍시	O	O	X	X	X	X	
진안군	O	X	X	X	X	X	
합 계	10	2	0	1	0	0	

[표 34] 전라남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강진군	X	X	X	X	X	X	
고흥군							정보부존재
곡성군	X	X	X	X	X	X	
광양시	X	X	X	X	X	X	
구례군	X	X	X	X	X	X	
나주시	X	X	X	X	X	X	
담양군	X	X	X	X	X	X	
목포시	X	X	X	X	X	X	
무안군	X	X	X	X	X	X	
보성군	X	X	X	X	X	X	
순천시	O	△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신안군	O	X	X	X	X	X	
여수시	O	O	X	X	X	X	
영광군	X	X	X	X	X	X	
영암군	△	X	X	X	X	X	
완도군							미답변
장성군	O	X	X	X	X	X	
장흥군	O	X	X	X	X	X	
진도군	O	O	X	X	X	X	
함평군	O	X	X	X	X	X	
해남군	O	X	X	X	X	X	광견병검사
화순군	X	X	X	X	X	X	
합 계	8	2	0	0	0	0	

[표 35] 경상북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경산시	O	△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경주시	O	X	X	X	X	X	
고령군	O	△	X	X	X	X	
구미시	O	X	X	X	X	X	
군위군	X	X	X	X	X	X	
김천시	O	X	X	X	△	X	
문경시	O	X	X	X	X	X	
봉화군	X	X	X	X	X	X	
상주시	O	X	X	X	X	X	
성주군	X	X	X	X	X	X	
안동시	O	O	X	X	X	X	
영덕군	O	△	X	X	X	X	
영양군	O	X	X	X	X	X	
영주시	O	X	X	X	X	X	
영천시	O	O	△	X	X	X	
예천군	O	X	X	X	X	X	
울릉군	O	X	X	X	X	△	
울진군	X	X	X	X	X	X	
의성군	O	X	X	X	X	X	
청도군	O	X	X	X	X	X	
청송군	X	X	X	X	X	X	
칠곡군	O	O	X	X	X	X	
포항시	O	O	X	X	X	X	
합 계	18	4	0	0	0	0	

[표 36] 경상남도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거제시	O	O	X	X	X	X	
거창군	O	X	X	X	X	X	
고성군	X	X	X	X	X	X	
김해시	O	△	X	X	X	X	
남해군	X	X	X	X	X	X	
밀양시	O	△	X	X	X	X	
사천시	X	X	X	X	X	X	
산청군	X	X	X	X	X	X	
양산시	O	O	X	X	X	X	
의령군	O	O	X	X	X	X	기생충검사
진주시	O	△	X	X	X	X	
창녕군	O	X	X	X	X	X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	X	X	X	X	X	X	
창원시 의창·정산구	X	X	X	X	X	X	
창원시진해구	O	△	△	△	X	X	
통영시	O	△	X	△	O	X	
하동군	X	X	X	X	X	X	
함안군	O	△	X	△	X	X	
함양군	O	X	X	X	X	X	
합천군	O	△	X	X	X	X	키트·심장사상충
합 계	13	3	0	0	1	0	

[표 37] 제주특별시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항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기타
	O	O	X	X	X	X	
서귀포시							
제주시							

※ 유기동물 보호소 도비 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시 자체 응답

* O : 전 개체 대상 검사

* △ : 1) 전 개체 대상이 아닌 선별적 또는 필요시, 의심시 검사 2) 키트검사 중 파보, 코로나 등 전염병 진단이 아닌 심장사상충 키트만 검사

* 합계 : O 개수의 합 (전 개체 대상 검사 제공할 경우)

[표 38] 전국 유기동물 입소 시 검사 현황

	신체검사 (육안·촉진검사)	키트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 또는 분변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실시	164	49	0	3	2	1
선별적 실시	1	59	8	15	8	4
미 실시	44	101	201	191	199	204
정보부존재/ 미답변	13	13	13	13	13	13

B. 조사 분석

유기동물 보호소는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수용하고 있는 특성상 언제나 전염성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유기·유실동물 역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각종 사고와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입소동물의 건강상 이상을 확인하거나 이미 보호 중인 동물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입소하는 동물에 대한 검사나 일정 기간 동안의 격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입소 동물에 대하여 육안검사 및 촉진검사 등 간소한 신체검사 정도의 입소 검사만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마저 전혀 시행하지 않는 보호소도 다수 존재했다. 조사대상인 전체 222개 보호소 중 육안 및 촉진검사를 실시한다고 답한 곳은 164개소였으며,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보호소는 44개였다. 실시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련정보가 부재한 곳도 13개소에 달했다. 입소시 X-Ray 검사를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키트검사는 절반에 가까운 101개, 혈액검사는 191개, 소변 또는 분변검사는 199개,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는 204개 보호소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입소 시 기본 검사는 육안검사, 촉진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로 다소 열악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산 영도구 역시 2015년 이후 매년 입소하는 300마리 가량의 유기동물 중 200마리 이상 자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본 검사나 기초건강관리도 제공되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에도 보호 동물에 대한 입소 검사 및 치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사이 2018년 약 700두의 유기동물 중 자연사 300두를 돌파했다. 울산 남구 또한 입소 시 기본 검사가 제공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4년 간 평균 880마리 유기동물 중 절반 가량인 433마리가 자연사하고 있어 현장 조사 진행의 필요를 크게 절감하기도 했다.

강원 지역도 입소 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는 대체로 신체검사 또는 육안, 촉진검사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강원도는 2018년 전국 유실·유기동물 중 4.4%가 발생하여³⁾ 타 시·도에 비해 유기동물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원주시의 경우 자연사 두수가 매년 400두를 상회하는 반면 기본 검사는 ‘겉모습 확인’에 지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중 고수준의 검사 및 치료 제공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 용

3)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19.07.23.).

인시의 경우 직영 형태로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증상 발현 및 질병 의심 시 혈액 및 소변, 방사선, 초음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기본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화성 및 대구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이 신설되며 파보, 디스템퍼(홍역·범백)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키트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황조사 결과 수많은 지자체에서 입소 시 전염병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보호소 내 개체들이 전염성 질병 전파가 용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 소지가 다분하다. 밀집도 높은 보호소 특성 상 개체 내 파보, 홍역 등 치사율 높은 전염성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개체 간 전염을 막고 시설 내부에 도사리는 바이러스의 근본적 제거를 위한 조치들이 다방면으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 동물의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키트 검사 등은 유기동물 보호소 내 입소 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환경 유지를 위하여 기본 검사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A. 조사 결과

[표 39]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강남구	○	○	○	○	○	△	○	○	○	
강동구	△	○	○	X	○	X	○	△	○	
강북구	○	○	○	○	○	△	○	○	○	
강서구	○	○	○	○	○	△	○	○	○	
관악구	○	○	X	X	X	X	○	○	○	
광진구	○	○	○	○	○	△	○	○	○	
구로구	○	○	○	○	○	△	○	○	○	
금천구	○	○	○	○	○	△	○	○	○	
노원구	○	○	○	○	○	△	○	○	○	
도봉구	○	○	○	○	○	△	○	○	○	
동대문구	○	○	○	○	○	△	○	○	○	
동작구	△	○	○	X	X	X	X	X	○	
마포구	○	○	○	○	○	○	○	○	○	
서대문구	○	○	○	○	○	△	○	○	○	

서초구	△	○	○	X	○	X	○	△	○
성동구	○	○	○	○	○	△	○	○	○
성북구	○	○	○	○	○	△	○	○	○
송파구	○	○	○	○	○	△	○	○	○
양천구	X	X	X	X	X	X	X	X	X
영등포구	○	○	○	○	○	△	○	○	○
용산구	X	X	X	X	X	X	○	△	○
은평구	○	○	○	○	○	△	○	○	○
종로구	○	○	○	○	○	△	○	○	○
중구	○	○	○	○	○	△	○	○	○
중랑구	정보부존재								
합 계	19	22	21	18	20	1	22	19	23

[표 40]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강서구	○	○	X	X	X	X	X	X	○	
금정구	○	X	○	X	X	X	○	△	○	기생충 감염 시 구충제 투여
기장군	○	X	○	○	X	X	○	△	○	기생충 감염 시 구충제 투여
남구	○	X	○	X	X	X	○	△	○	기생충 감염 시 구충제 투여
동구	○	○	○	X	○	○	○	○	○	고양이 구내염, 탈진 등 치료
동래구	○	X	○	X	X	X	○	△	○	기생충 감염 시 구충제 투여
부산진구	○	○	X	X	X	X	X	X	○	
북구	△	○	△	X	△	X	○	△	X	
사상구	○	○	X	X	X	X	X	X	○	
사하구	○	○	X	X	X	X	X	X	○	
서구	△	○	○	X	○	○	○	○	○	고양이 구내염, 탈진 등 치료
수영구	○	X	○	X	X	X	○	△	○	기생충 감염 시 구충제 투여
연제구	X	○	○	X	X	X	○	△	○	
영도구	X	○	X	X	○	X	X	○	○	안구적출수술
중구	X	○	○	X	○	○	○	○	○	고양이 구내염, 탈진 등 치료
해운대구	○	X	○	X	X	X	○	△	○	기생충 감염 시 구충제 투여
합 계	11	10	10	1	4	3	11	4	15	

[표 41] 대구광역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남구	X	X	X	X	X	X	X	X	O	
달서구	X	X	X	X	X	X	X	X	X	
달성군	X	O	X	X	X	X	O	O	O	
동구	X	X	X	X	X	X	X	X	X	
북구	X	X	X	X	X	X	X	X	X	진드기약처리 (외부구충)
서구	X	O	X	X	X	X	O	O	O	
수성구	X	X	X	X	X	X	X	X	O	
중구	X	X	X	X	X	X	X	X	O	
합 계	0	2	0	0	0	0	2	2	5	

[표 42]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강화군	O	O	X	X	X	X	X	X	O	
계양구	X	X	X	X	X	X	X	X	O	
남동구	O	O	X	X	X	X	O	O	O	
동구	X	O	X	X	X	X	O	O	O	
미추홀구	O	O	X	X	X	X	O	O	O	
부평구	O	O	X	X	X	X	△	△	△	
서구	X	X	X	X	X	X	△	△	O	
연수구	O	O	X	X	X	X	O	O	O	
옹진군	O	O	X	X	X	X	O	O	O	
중구	X	O	X	X	X	X	O	X	O	
합 계	6	8	0	0	0	0	6	5	9	

[표 43]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	○	○	X	X	△	○	○	○
광산구									전염병 및 심장사상충 선별적 치료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체 응답

[표 44] 대전광역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	○	○	X	X	X	○	X	○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 응답

[표 45]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남구	X	X	X	X	X	X	X	X	○
동구	X	X	X	X	X	X	X	X	○
북구	X	X	X	X	X	X	○	○	○
울주군	△	○	X	○	X	X	X	X	○
중구	○	○	X	X	X	X	○	○	○
합 계	1	2	0	1	0	0	2	2	5

[표 46] 세종특별자치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	○	○	○	○	○	○	○	○	저체온증치료 심폐소생술 등

[표 47] 강원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강릉시	X	X	X	X	X	○	X	X	○	
고성군	△	○	X	X	X	X	○	X	○	
동해시	X	X	X	X	X	X	X	X	○	
삼척시	△	○	○	X	X	X	○	○	○	
속초시	△	○	X	X	X	X	X	○	○	
양구군	X	X	X	X	X	X	X	X	○	
양양군	정보부존재									
영월군	X	○	○	X	X	X	X	X	X	
원주시	△	○	X	X	X	X	○	○	○	
인제군	X	○	X	X	X	X	○	X	X	
정선군	X	X	X	X	X	X	X	X	○	
철원군	X	X	X	X	X	X	X	X	X	
춘천시	○	X	○	X	X	○	X	X	○	
태백시	X	○	X	X	X	X	○	X	X	
평창군	정보부존재									
홍천군	○	○	○	X	X	X	X	X	○	
화천군	X	X	X	X	X	○	○	○	X	
횡성군	X	○	○	X	X	X	○	○	○	
합 계	2	9	5	0	0	3	7	5	11	

[표 48] 경기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가평군	△	O	O	X	X	X	O	X	O	
고양시	X	X	X	X	X	X	O	X	O	
과천시	X	X	X	X	X	X	X	X	X	
광명시	O	O	O	O	△	X	X	O	O	수술-혈막염
광주시	△	O	O	X	X	X	O	X	O	개선총 모낭총 등 치료 (외부구충)
구리시	△	O	X	X	X	X	X	X	O	심폐소생술
군포시				비공개					O	
김포시	△	O	O	X	O	X	O	△	O	
남양주시	△	X	O	X	X	X	O	X	O	
동두천시	O	O	X	X	X	X	O	X	O	
부천시	O	X	O	X	O	X	O	O	O	
성남시						정보부존재				
수원시	△	O	X	X	X	X	O	X	O	
시흥시	O	O	O	O	△	X	X	O	O	수술-혈막염
안산시	△	O	O	X	O	X	O	X	O	
안성시	X	O	X	X	X	X	X	X	O	
안양시	O	O	O	O	△	X	X	O	O	수술-혈막염
양주시	△	O	△	△	△	△	O	X	O	
양평군						정보부존재				
여주시	X	X	X	X	X	X	O	O	O	
연천군						정보부존재				
오산시	X	O	△	X	△	X	O	△	X	
용인시	△	O	O	X	△	O	O	O	O	비노기질환 스케일링 등
의왕시	X	X	X	X	X	X	X	X	O	
의정부시	△	O	O	X	O	X	O	△	O	
이천시	O	X	X	X	X	X	X	X	O	기생충치료
파주시						정보부존재				
평택시	X	O	X	X	X	X	X	O	O	
포천시	△	O	O	X	O	X	O	△	O	
하남시						정보부존재				
화성시	X	X	X	X	X	X	O	△	O	고비용 필요 조치는 미 실시
합 계	6	17	12	3	5	1	16	7	24	

[표 49] 충청북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괴산군	O	O	X	X	X	X	O	X	O	
단양군	△	△	△	△	△	△	O	△	O	
보은군	X	X	O	X	X	X	O	O	O	
영동군	X	O	X	X	X	X	X	X	O	
옥천군	O	O	O	O	O	O	O	O	O	저체온증치료, 산소케이지, 심폐소생술 등
음성군	X	X	X	X	X	X	O	X	O	
제천시	X	O	X	X	X	X	O	O	O	
증평군	X	X	X	X	X	X	X	X	X	
진천군	X	O	X	X	X	X	X	X	X	심장사상충치료
청주시	O	O	△	X	X	X	O	O	O	결석 및 슬개골 수술 등
충주시	△	O	X	X	X	X	O	X	O	
합 계	3	7	2	1	1	1	8	4	9	

[표 50] 충청남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계룡시	O	O	△	△	△	△	O	X	O	탈수 등 치료
공주시	정보부존재									
금산군	정보부존재								O	
논산시	△	O	X	X	X	X	O	O	O	
당진시	X	X	X	X	X	X	X	X	X	
보령시	X	X	X	X	X	X	X	O	O	
부여군	X	O	X	X	X	X	X	X	X	기생충구제
서산시	O	O	X	X	O	X	O	X	O	
서천군	X	X	X	X	X	X	O	X	O	
아산시	X	X	X	X	X	X	X	X	O	
예산군	X	X	X	X	X	X	X	X	O	허약 시 수액조치
천안시	X	O	X	O	X	X	X	O	O	탈수시 수액투여 등
청양군	X	X	X	X	X	X	X	X	X	
태안군	정보부존재									
홍성군	X	X	X	X	X	X	X	X	X	
합 계	2	5	0	1	1	0	4	3	9	

[표 51] 전라북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고창군	X	X	X	X	X	X	X	X	O	
군산시	O	O	X	X	X	X	O	O	O	심장사상충치료
김제시	X	O	O	X	O	X	X	X	X	
남원시	X	X	O	X	X	X	X	X	O	
무주군	X	O	X	X	X	X	O	X	X	
부안군	O	O	X	O	O	O	X	X	X	
순창군	X	X	X	X	X	X	X	X	X	
완주군	X	X	X	X	X	X	X	X	O	
익산시	X	X	X	X	X	X	X	X	O	
임실군	X	X	X	X	X	X	O	X	O	
장수군	X	X	X	X	X	X	X	X	X	
전주시	X	X	X	X	X	X	X	X	X	
정읍시	X	O	X	X	X	O	O	O	O	
진안군	X	X	X	X	X	X	O	X	X	
합 계	2	5	2	1	2	2	5	2	7	

[표 52] 전라남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강진군	X	X	X	X	X	X	X	X	O	
고흥군	정보부존재									
곡성군	X	X	X	X	X	X	X	X	X	
광양시	X	X	X	X	X	X	X	X	X	
구례군	X	X	X	X	X	X	X	X	O	
나주시	X	X	X	X	X	X	X	X	X	
담양군	X	O	X	X	X	X	X	O	X	
목포시	X	X	X	X	X	X	X	X	O	
무안군	X	O	X	O	X	X	X	X	O	
보성군	X	X	X	X	X	X	X	X	O	
순천시	△	△	△	△	△	△	△	△	X	
신안군	△	X	X	X	X	X	O	O	O	
여수시	X	X	X	X	X	X	X	X	O	
영광군	X	O	X	X	X	X	O	O	O	
영암군	△	O	X	X	X	X	O	O	O	기생충구제
완도군	미답변									
장성군	X	O	O	X	X	X	X	X	X	
장흥군	X	X	X	X	X	X	X	X	X	
진도군	X	O	O	X	X	X	O	O	O	
함평군	O	O	X	X	X	X	O	O	O	
해남군	X	O	X	X	X	X	O	O	O	
화순군	X	X	X	X	X	X	X	X	O	
합 계	1	8	2	1	0	0	6	7	13	

[표 53] 경상북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경산시	O	O	X	X	X	O	O	O	O	구내염 치료
경주시	X	X	X	X	X	X	X	X	O	
고령군	X	O	X	X	X	X	O	X	O	
구미시	△	O	X	X	X	X	X	X	O	
군위군	X	X	X	X	X	X	O	X	O	
김천시	△	X	X	X	X	X	X	O	O	기생충구제
문경시	△	O	O	X	X	X	O	O	O	
봉화군	X	X	X	X	X	X	X	X	O	외부기생충구제
상주시	△	△	△	△	△	△	△	O	O	
성주군	O	O	X	X	X	X	X	X	O	
안동시	X	O	X	X	X	X	X	X	O	
영덕군	△	△	△	△	△	△	△	△	O	
영양군	X	X	X	X	X	X	X	X	O	
영주시	O	O	X	X	X	X	O	O	O	
영천시	△	O	O	X	X	X	O	X	O	
예천군	X	O	X	X	X	X	O	O	O	
울릉군	O	O	X	X	X	X	O	O	O	기생충 감염 의심 시 치료
울진군	X	X	X	X	X	X	O	O	O	
의성군	X	O	X	X	X	X	X	O	O	기생충구제
청도군	X	X	X	X	X	X	X	X	O	
청송군	X	X	X	X	X	X	X	X	X	
칠곡군	X	X	O	X	X	X	△	X	O	내외부기생충구제
포항시	O	O	X	X	X	X	O	O	O	구충제급여
합 계	5	12	3	0	0	1	10	10	22	

[표 54] 경상남도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거제시	△	O	X	X	X	X	O	X	O	
거창군	X	O	O	X	X	X	X	X	O	해충제거
고성군	X	X	X	X	X	X	X	X	O	
김해시	X	X	X	X	X	X	O	O	O	
남해군	X	X	X	X	X	X	X	X	O	
밀양시	X	O	O	X	X	X	O	O	O	기생충구제
사천시	X	X	X	X	X	X	X	X	X	
산청군	△	O	X	X	X	X	X	X	X	기생충구제
양산시	O	O	X	X	X	△	O	O	O	
의령군	O	O	O	X	X	X	O	X	O	기생충구제
진주시	△	△	△	△	△	△	△	△	O	
창녕군	O	O	O	X	X	X	O	O	O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	X	X	X	X	X	X	X	X	O	
창원시 의창·성산구	X	O	O	X	X	X	O	O	O	
창원시진해구	X	O	X	X	△	X	O	O	O	
통영시	O	X	O	X	X	X	X	X	O	
하동군	X	X	X	X	X	X	X	X	O	
함안군	X	O	X	X	X	O	O	O	O	
함양군	X	O	X	X	X	X	O	O	O	
합천군	X	X	X	X	X	X	X	O	O	
합 계	4	11	6	0	0	1	10	9	18	

[표 55] 제주특별시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여부

	질병						상해		응급 치료 여부	기타
	호흡기 질환	피부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타박상	골절		
	O	O	O	X	△	X	O	△	O	탈장, 자궁축농증, 비뇨 기질환, 구내염 등 치료
제주시										
서귀포시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시 자체 응답

- * △ : 예후 양호 시 치료 등 전 개체 대상 치료가 아닐 경우 / 치료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어려운 애매한 답변(EX. 수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 이상 발견 시 치료 등) / 단순 대증 치료 및 처방 수준
- * 호흡기 질환 : 폐렴 등 중증 질환 치료 시 O / 감기약 처방 등 단순 대증 치료 수준 시 △
- * 눈·귀 : 눈병 또는 귓병 중 선택 치료 시 △
- * 골절 : 수술 또는 깁스 통한 고정 시 O / 진통제, 소염제 등 처방 정도 시 △
- * 합계 : O 개수의 합

[표 56] 전국 유기동물 치료 항목 및 응급치료 현황

	호흡기 질환	피부병	질병 소화기 질환	식욕 부진	눈·귀	전염성 질환	상해 타박상	골절	응급 치료 여부
실시	64	122	67	28	34	14	113	81	174
선별적실시	38	5	10	7	15	26	7	23	1
미실시	106	81	131	173	159	168	88	104	35
정보부존재/ 미답변	14	14	14	14	14	14	14	14	12

B. 조사 분석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 제공은 보호소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핵심사항이다. 또한 보호소의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하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문조사 결과 ‘유기동물의 입양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질병에 걸려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기동물의 건강관리는 면밀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공개 청구자료만 놓고 본다면 우려에 비해 치료의 제공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응급치료 여부의 경우 222개 지자체 중 77.4%인 174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고, 피부병에 대한 치료와 (122개, 55.0%)와 상해/타박상(113개, 50.9%)에 대한 치료도 비교적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기동물에 대해 응급치료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입소 시 가장 기본적인 육안 및 촉진 검사를 한다고 했던 응답(164개)보다 많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동일한 보호소에 위탁을 맡기고 있음에도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답이 일부 다른 점도 치료 자체는 고사하고 그 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게끔 한다. 이는 치료제공의 대상 판단기준과 치료의 범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부재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추후에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련 정보의 보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을 살펴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해/타박상, 피부병, 골절 등에 비해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염성 질환의 경우 치료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단 14곳에 불과했다.

또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치료제공 범위가 각 지자체 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치료를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감기, 피부병 등 단순 대증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시 다양한 기본 검사 진행 및 검사 결과에 근거한 과목별 치료가 제공되고 있었다. 반면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호소 내 자연사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료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도 존재했다.

서울의 경우 감기, 피부병, 상해, 설사 등 이상 소견 발견 시 단순 치료는 모두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제공되는 치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구 달서구, 북구는 상당한 유기동물 및 자연사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진드기약 처치를 제외한 치료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강원은 타 지역에 비해 유기동물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 반면 (응급)치료 및 건강관리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고, 기본 검사도 대체로 신체검사 수준에 머무르는 등 보호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 정도가 열악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권은 지자체별 검사, 치료, 건강관리 편차가 더욱 컸다. 경기 용인시의 경우 내·외과, 피부·비뇨기과, 치과, 산과 등 다양한 과목별 검사와 치료 및 수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4년 전부터 매년 줄어들기 시작한 자연사 두수가 2015년 355마리에서 2018년 30마리까지 감소했다는 사실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적절한 치료 제공에 따른 긍정적 결과로 판단된다.

충북도 마찬가지로 보호 동물에 대한 검사, 치료 등 수의학적 진단 및 치료 제공에 편차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옥천군은 다양한 질환에 대한 대증 치료가 기본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저체온증 치료, 산소케이지 제공 등 응급 상황에 따른 세심한 치료가 제공되는데, 지난 4년 간 평균 193마리의 유기동물 중 자연사 두수는 약 30마리 정도를 웃도는 수치로 보호 동물에 대한 치료제공 여부가 자연사에 미치는 영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증평균의 경우 (응급)치료, 기초 건강관리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반면 유기동물 및 자연사 두수 모두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기동물 보호소 내 환경 및 보호의 질을 높일 필요성을 발견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서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우선 순위 조항을 두고 있다. 인천 부평구 및 서구의 경우 예후가 양호한 경우에만 골절·상해 치료 및 기초 건강관리를 제공했다. 심각한 외상이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예후가 불량할 경우 어떠한 응급조치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추후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4.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A. 조사 결과

[표 57]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강남구	○	○	△	△	
강동구	○	○	×	×	
강북구	○	○	△	△	
강서구	○	○	△	△	
관악구	×	×	×	×	
광진구	○	○	△	△	
구로구	○	○	△	△	
금천구	○	○	△	△	
노원구	○	○	△	△	
도봉구	○	○	△	△	
동대문구	○	○	△	△	
동작구	○	○	○	×	
마포구	○	○	○	×	처방식급여, 인공수유, 식이조절 등
서대문구	○	○	△	△	
서초구	○	○	×	×	
성동구	○	○	△	△	
성북구	○	○	△	△	
송파구	○	○	△	△	
양천구	×	×	×	×	
영등포구	○	○	△	△	
용산구	×	×	○	×	
은평구	○	○	△	△	
종로구	○	○	△	△	
중구	○	○	△	△	
중랑구			정보부존재		
합 계	21	21	3	0	

[표 58]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강서구	X	X	X	X	유아동물 인큐베이터, 노령동물 집중관리실 보호
금정구	X	X	O	O	심한 피부질환 시 약육
기장군	X	X	O	O	심한 피부질환 시 약육
남구	X	X	O	O	심한 피부질환 시 약육
동구	O	X	O	X	
동래구	X	X	O	O	심한 피부질환 시 약육
부산진구	X	X	X	X	유아동물 인큐베이터, 노령동물 집중관리실 보호
북구	X	X	X	X	
사상구	X	X	X	X	유아 및 노령동물 집중관리실 보호
사하구	X	X	X	X	유아 및 노령동물 집중관리실 보호
서구	O	X	O	X	
수영구	X	X	O	O	심한 피부질환 시 약육
연제구	X	X	X	X	수시 건강 점검
영도구	X	X	X	X	
중구	X	X	O	O	
해운대구	X	X	O	O	심한 피부질환 시 약육
합 계	2	0	9	7	

[표 59] 대구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남구	X	X	X	X	
달서구	X	X	X	X	
달성군	X	X	△	X	인공포유,외부구충 등
동구	X	X	X	X	목욕
북구	X	X	X	X	
서구	X	X	△	X	인공포유,외부구충 등
수성구	X	X	O	X	
중구	X	X	X	X	
합 계	0	0	1	0	

[표 60]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강화군	O	X	O	X	
계양구	X	X	X	X	건강상태 예찰
남동구	X	X	O	X	
동구	X	X	X	X	귀 청소, 목욕
미추홀구	X	X	O	X	
부평구	△	X	△	X	부분적 미용 및 목욕 (예후 양호한 경우)
서구	X	X	△	X	부분적 미용 및 목욕 (예후 양호한 경우)
연수구	X	X	O	X	
옹진군	X	X	O	X	
중구	X	X	X	X	
합 계	1	0	5	0	

[표 61]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X	X	X	X	매일 회진 및 관리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체 응답

[표 62] 대전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O	X	O	O	미용, 목욕
유성구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 응답

[표 63]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남구	X	X	X	X	
동구	X	X	X	X	
북구	X	X	X	X	
울주군	X	X	X	X	
중구	△	X	O	△	
합 계	0	0	1	0	

[표 64] 세종특별자치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O	X	O	O	털영검 시 미용

[표 65]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강릉시	X	X	X	X	수유, 노령사료, 치료동물 온열게이지 제공
고성군	X	X	X	X	
동해시	O	X	O	O	
삼척시	X	X	X	X	영양관리 및 피부상태 확인
속초시	X	X	X	O	
양구군	X	X	X	X	
양양군			정보부존재		
영월군	X	X	X	X	
원주시	X	X	X	X	
인제군	O	X	O	O	
정선군	X	X	X	X	
철원군	X	X	X	X	
춘천시	O	X	X	X	
태백시	X	X	X	X	
평창군			정보부존재		
홍천군	X	X	X	X	
화천군	X	X	X	X	
횡성군	X	X	X	X	
합 계	3	0	2	3	

[표 66]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가평군	O	X	X	O	영양제투여
고양시	X	X	X	X	
과천시	X	X	X	X	
광명시	O	X	X	X	
광주시	O	X	O	X	산책 등
구리시	O	O	X	X	
군포시	X	X	X	X	
김포시	O	O	X	X	
남양주시	△	X	X	X	식욕 및 분변상태 점검
동두천시	O	O	X	X	
부천시	X	X	X	X	
성남시			정보부존재		
수원시	X	X	X	X	
시흥시	O	X	X	X	
안산시	O	X	X	X	
안성시	O	X	O	X	
안양시	O	X	X	X	
양주시	X	X	X	X	식욕,대소변,활동량 확인
양평군			정보부존재		
여주시	X	X	X	X	운동
연천군			정보부존재		
오산시	O	X	O	X	영양제투여
용인시	O	X	O	O	
의왕시	X	X	X	X	
의정부시	O	O	X	X	
이천시	X	X	O	X	센터 내 운동장 산책
파주시			정보부존재		
평택시	O	X	X	X	
포천시	O	O	X	X	
하남시			정보부존재		
화성시	O	X	X	X	
합 계	16	5	5	2	

[표 67] 충청북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괴산군	X	X	X	X	
단양군	X	X	X	X	
보은군	O	X	X	X	
영동군	O	X	O	X	
옥천군	O	X	O	O	털영킴 시 미용
음성군	X	X	X	X	
제천시	X	X	X	X	영양간식급여
증평군	X	X	X	X	
진천군	X	X	X	X	
청주시	△	X	O	X	대형견 산책, 뜰장개체 놀이터, 어린개체 예방접종 등
충주시	O	X	X	X	2-3일 격리 후 입소
합 계	4	0	3	1	

[표 68] 충청남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계룡시	X	X	X	X	
공주시			정보부존재		
금산군	X	X	X	X	
논산시	X	X	O	X	
당진시	X	X	X	X	
보령시	X	X	X	X	
부여군	X	X	X	X	
서산시	X	X	X	X	
서천군	X	X	X	X	
아산시	O	X	O	X	
예산군	X	X	X	X	
천안시	X	X	X	X	
청양군	X	X	X	X	
태안군			정보부존재		
홍성군	X	X	X	X	
합 계	1	0	2	0	

[표 69] 전라북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고창군	X	X	X	X	
군산시	O	X	X	X	운동, 산책 등
김제시	X	X	X	X	수액, 영양제투여
남원시	X	X	X	X	체온 및 영양관리
무주군	X	X	X	X	
부안군	X	X	O	△	
순창군	X	X	X	X	
완주군	X	X	X	X	
익산시	O	X	X	X	취약개체 별도관리
임실군	X	X	X	X	
장수군	X	X	X	X	
전주시	X	X	X	X	활력/배변/배노상태, 사료섭취량 확인 등
정읍시	O	X	X	X	영양상태 확인
진안군	X	X	X	X	
합 계	3	0	1	0	

[표 70] 전라남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강진군	X	X	X	X	
고흥군			정보부존재		
곡성군	X	X	X	X	운동,수분 및 영양관리
광양시	X	X	X	X	
구례군	X	X	X	X	
나주시	X	X	X	X	
담양군	△	X	O	X	
목포시	X	X	X	X	
무안군	X	X	X	X	
보성군	X	X	X	X	필요시 영양제 투여
순천시	O	X	O	O	
신안군	X	X	O	O	
여수시	X	X	X	X	원활한 소화 및 배변 위한 기본조치
영광군	X	X	X	X	
영암군	X	X	X	X	섭식관리
완도군			미답변		
장성군	X	X	X	X	
장흥군	X	X	X	X	
진도군	O	X	O	O	
함평군	X	X	X	X	
해남군	X	X	X	X	
화순군	X	X	X	X	
합 계	2	0	4	3	

[표 71] 경상북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경산시	O	X	O	X	
경주시	X	X	X	X	섭식관리
고령군	X	X	O	X	
구미시	X	X	O	X	
군위군	X	X	X	X	
김천시	O	X	O	O	
문경시	X	X	X	X	영양제 주사
봉화군	X	X	X	X	
상주시	X	X	X	X	식욕 및 활동성 체크
성주군	X	X	X	X	
안동시	X	X	O	X	
영덕군	X	X	X	X	
영양군	O	X	O	X	
영주시	X	X	X	X	
영천시	O	X	O	X	유산균 급여
예천군	X	X	O	X	
울릉군	X	X	X	X	
울진군	X	X	X	X	
의성군	X	X	O	X	
청도군	X	X	X	X	
청송군	X	X	X	X	
칠곡군	X	X	O	O	영양제 투여
포항시	O	X	X	X	
합 계	5	0	10	2	

[표 72] 경상남도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거제시	X	X	X	X	행동이상 등 단순사양관리
거창군	X	X	X	X	배설물 등 확인
고성군	X	X	X	X	
김해시	X	X	X	X	유아 및 노령동물 집중관리실 보호
남해군	X	X	X	X	
밀양시	O	X	O	X	
사천시	X	X	X	X	
산청군	X	X	X	X	
양산시	X	X	X	X	식욕,호흡,배변상태 체크
의령군	X	X	X	X	
진주시	O	X	O	O	
창녕군	X	X	O	X	영양부족 개체 고열량사료 급여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	O	X	X	X	
창원시 의창·성산구	O	X	O	X	목욕,미용,산책
창원시진해구	O	X	O	O	해충방지 밴드착용, 약욕 및 미용
통영시	X	X	X	X	
하동군	O	X	O	O	식욕 및 음수상태 관찰
함안군	X	X	O	X	
함양군	X	X	X	X	식욕 및 사료/물 섭취량,배변/배뇨 확인
합천군	O	X	O	X	
합 계	7	0	8	3	

[표 73] 제주특별시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항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예방	사상충예방	기타
서귀포시	X	X	O	X	
제주시					

※ 유기동물 보호소 시비 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시 자체 응답

* 위생관리 및 소독, 건강상태 예찰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상 의무조항 이행 시 미포함

* 사료 및 물 급여 등 기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 시 미포함

* 구충예방 : 내부 또는 외부구충 중 선택 예방 시 △

[표 74] 전국 유기동물 보호 중 기초 건강관리 제공 현황

	예방접종	면역증강제	구충	사상충예방
실시	67	26	57	23
선별적실시	5	0	21	19
미 실시	138	184	132	168
정보부존재/ 미답변	12	12	12	12

B. 조사 분석

예방접종 및 구충제 급여 등은 장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보호동물의 건강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들로 보호소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항목이다. 기초 건강관리의 경우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상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기동물의 보호소 내 체류기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접종과 구충의 경우 실시한다는 지자체는 각각 32.4%와 35.1%에 불과했으며, 사상충 예방은 그보다 낮은 18.9%만 실시한다고 답했다.

서울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과 함께 면역 증강제를 처치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는 건강관리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쳐졌는데, 별도의 건강관리를 시행하지 않거나 건강관리 중인 지자체의 경우에도 외부 구충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충청, 전라 지역 역시 ‘소독, 청소’, ‘온도 및 습도 관리’, ‘사료 및 물 제공’ 등 보호동물에 대한 건강관리가 아닌 기본적인 시설 관리의 수준으로 답변하고 있었다. 지방의 경우 건강 관리뿐만 아닌 기본 검사, 치료 등 수의학적 관리 수준은 대체로 열악했다.

반면 세종, 경기 용인시, 충북 옥천군의 경우 기초 건강관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 곳 모두 보호동물에 대한 예방접종과 함께 구충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정기 급여 중이었으며 털 엉킴이 심한 동물에게 미용을 실시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호소 입소 동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 중인 개체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보장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건강관리 수준을 공통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4조에서는 필요한 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여 실질적으로 개별 보호소 및 관할 지자체의 관리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5. 2018년 예산 집행 및 2019년 예산 현황 - 치료비를 중심으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별 2018년 예산 집행 및 2019년 예산 현황을 통해 치료비, 약제비 등 보호 동물의 직접 관리 비용이 작년 얼마나 사용됐고 올해 얼마나 편성됐는지 확인하고자 총 2회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치료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총 30곳으로, 나머지 192개 지자체는 치료비 집행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표 75] 치료비 확인 지자체 2018년 예산 집행 및 2019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마리)

	2018년			2019년	
	총 집행액	치료비 집행액(비율)	보호동물 수	총 예산	치료비 집행액(비율)
강원 강릉시	88,796	165,95(18.7%)	858	133,000	19,200(14.4%)
강원 고성군	24,417	600(2.5%)	104	-	-
강원 동해시	88,445	29,919(33.8%)	424	125,000	32,000(25.6%)
강원 삼척시	57,047	9,810(17.2%)	176	-	-
강원 속초시	79,410	5,576(7.0%)	568	-	-
강원 태백시	16,980	1,800(10.6%)	80	-	-
경남 밀양시	137,932	4,770(3.5%)	1,623	193,750	19,000(9.8%)
경남 사천시	64,740	940(1.5%)	648	-	-
경남 산청군	54,996	11,220(20.4%)	229	32,200	4,800(14.9%)
경남 진주시	92,455	45,766(49.5%)	437	-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	161,706	13,940(8.6%)	683	-	-
경남 창원시 의창·성산구	302,294	52,907(17.5%)	1,046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240,631	2,290(1.0%)	544	256,958	4,000(1.6%)
경남 함안군	43,845	25,655(58.5%)	360	-	-
경남 합천군	50,424	8,571(17.0%)	193	52,000	-
경북 경산시	118,161	17,000(14.4%)	796	-	-
경북 구미시	67,080	1,080(1.6%)	144	67,080	1,080(1.6%)
경북 상주시	54,600	40,000(73.3%)	382	-	-
경북 안동시	147,990	30,700(20.7%)	60	161,840	48,500(30.0%)
경북 영주시	80,225	12,104(15.1%)	244	155,298	25,290(16.3%)
경북 영천시	44,050	5,000(11.4%)	212	117,568	5,000(4.3%)
경북 예천군	46,655	210(0.5%)	174	-	-
경북 울릉군	14,729	5,380(36.5%)	47	21,000	11,000(52.4%)
경북 칠곡군	56,890	16,890(29.7%)	292	-	-

경북 포항시	220,400	9,720(4.4%)	1,247	229,390	9,360(4.1%)
대전광역시	323,761	51,350(15.9%)	5,333	-	-
전남 목포시	91,725	10,575(11.5%)	1,245	66,000	10,000(15.2%)
전남 순천시	101,409	16,927(16.7%)	1,105	-	-
전남 영암군	27,696	3,546(12.8%)	140	-	-
전북 군산시	229,946	46,337(20.2%)	1,144	504,948	100,000(19.8%)

치료예산 집행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예·결산서 상 보호관리비에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의 정확한 치료비 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치료비뿐 아니라 포획을 제외한 보호에 관련된 예산이 뭉뚱그려져 있는 곳들이 많아 향후 세부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018년 치료예산 집행 내역의 확인이 가능했던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소 총 집행액은 총 3,129,435천 원이며, 이중 치료비 집행액은 총 497,178천 원(총 집행액의 15.8%)으로 보호소당 평균 16,573천 원이 치료비 명목으로 집행됐다. 같은 해 30개 지자체가 보호한 유기동물 수는 총 20,538마리로, 마리당 평균 치료비는 24,207원 수준이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올해부터 동물관리 수준 개선 일환의 예산이 신설되며 전염병 진단 키트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경기 화성시와 광주시도 예산 확보를 통해 각각 키트검사 비용과 예방접종 비용이 신규 편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018년 대비 2019년 유기동물 보호소의 전체 예산은 1억 여 원 이상 증가한 반면, 의료비는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시 의창·성산구의 경우 2018년 전년도 대비 자연사 개체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보호동물 대상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및 관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치료비 항목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를 반영하듯 2019년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증액 경향을 보이거나 이는 대부분 시설개보수로 인한 것이며, 치료비 항목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그 증가 폭이 높지 않았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연간 실적이 200두 이하이거나,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와 다른 업무를 중복 수행하여 예산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지자체 직영센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지자체 장이 판단하는 경우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경기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중 가장 많은 운영형태인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의 경우 지자체에 위탁비, 치료비를 분할 청구하기보다 필요나 편의에 의해 치료비를 위탁비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호 동물이 입소 후 일정 기간 이내 폐사할 경우 위탁비를 70% 정도만 지급한다는 계약조항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미 폐사한 입소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추후

관련 내용에 대한 더욱 면밀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하겠다.

6. 개체관리카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2018년 자연사 개체 대상 개체관리카드를 살펴봤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면 보호소에 유실·유기동물의 입소 시 개체별로 보호동물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개체관리카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 공개 가능한 지자체에 한해 내용을 확인, 분석했다.

개체관리카드 자료 자체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자연사율과 직접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보호소 내 개체별 관리가 어느 수준인지 추측할 수 있는 부가적 자료로서의 활용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수범 사례

[사진 1]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 전남 진도군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공고번호	전남-진도-2018-00029			
2. 구조정보	신고일	2018. 12. 13	구조일	2018. 12. 13
	신고자	문	주소(전화번호)	010-
	구조자	이대용	구조장소	진도를 계일교회 인근
	기타			
3. 동물정보	속종	개	품종	리트리버
	나이	1~2년	중성화	O / X / 미상
	특징	칩 없음, 문순하여 사람을 잘 따름		
4. 보호동물 사진				
5. 보호동물 관리사항	일자	내용		
	2018. 12. 14	심장사상증 및 구충제 투여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2018년 12월 28일	☐ 반환 ☐ 분양 ☒ 기증	이름 동물등록번호 주소 [●]폐사 []안락사 사유 장염 확인자 이대용	
7. 기타	[] 기타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진도개사업소 2018_00013			
2. 구조정보	신고일	2018. 8. 13.(월)	구조일	2018. 8. 13.(월)
	신고자	이	주소(전화번호)	010-
	구조자	한 광 진	구조장소	진도를 남동1길 주변
	기타			
3. 동물정보	속종	개	품종	진도개
	나이	3	중성화	O / X / 미상
	특징	취약, 문순		
4. 보호동물 사진				
5. 보호동물 관리사항	일자	내용		
	2018. 8. 13.	취약		
	2018. 9. 19.	심장사상증 및 구충제 투여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2018년 10월 16일	☐ 반환 ☐ 분양 ☒ 기증	이름 주소 번호 [●]폐사 []안락사 사유 장염 확인자 한광진	
7. 기타	[] 기타			

[사진 2]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 세종시

■ **문물보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469569201800177				
2. 구조정보	신고일	2018-05-09		구조일	2018-05-09
	신고자	이**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리얼핏동물병원		구조장소	장곡면 은율리
	출종	고양이	품종	한국 고양이	성별 수컷
3. 동물정보	나이	1살	중성화	Y	체중 1.2kg
	특징	약 3개월령. 피부병, 영양실조, 눈감. 귀를 심함. 순한			

4. 보호동물 사진



5.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이름		생년월일			
	{ } 반환 결과	주승		연락처			
		김영옥					
2018-05-26	[■] 폐사 [] 안락사	사유	경양실조 식이 거부. 서서히 양화	확인자	리얼핏동물병원		
	기타			확인자			

■ 中国书画函授大学肇庆分校 (肇庆市)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469569201800206					
2. 구조정보	신고일	2018-06-14		구조일	2018-06-14	
	신고자	이**		주소(전화번호)		
3. 동물정보	구조자	리얼벡동물병원		구조장소	부강역 앞 도로	
	속종	고양이	품종	한국 고양이	성별	암컷
	나이	1살	종사원	✓	태주	0.4kg
특징	왼쪽 2개월, 교통사고 추정, 비출혈, 결막염 심함, 신검증세					

4. 보호동물 사진



5.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 받기 [] 발송 [] 기함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물등록			
2018-06-29	[■]제사[]안학사	사유	식이 거부, 급사	확인자	리얼핏 동물병원
	기타			확인자	

공개된 개체관리카드 중 보호동물 확인이 가능한 사진과 자세한 폐사 사유까지 기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4곳에 불과했다. 전남 진도군, 충남 공주시의 경우 보호동물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까지 개체관리카드 상 작성·관리하고 있는 전국 유일한 보호소로 확인됐다.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조사 결과 적절한 동물 치료 수준을 유지하는 지자체로 판단된 세종시의 경우에도 보호동물의 건강상태와 폐사 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입소 당시 건강상태부터 특징, 그리고 어떤 치료 중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지까지 개체관리카드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했다.

B. 부실 사례

[사진 3]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 충북 증평군

유기동물 자연사 관리대장

[illegible]

[사진 4]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 경북 경주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2018-1206					
2. 구조정보	신고일	12.29	구조일	12.29		
	신고자	안장 파출소	주수(전화번호)	054-763-3112		
	구조자	K-1	구조장소	안장파출소		
	기타					
K3. 동물정보	종종	개	품종	믹스	성별	♂ / 수 / 미상
	나이	3M	중성화	O / X / 미상	체중	1.72kg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보호동물 사진1(3X4C_m)

보호동물 사진2(3X4C_m)

보호동물 사진3(3X4C_m)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2018-01063					
2. 구조정보	신고일	11.2	구조일	11.2		
	신고자	미상	주수(전화번호)	010-XXXX-XXXX		
	구조자	K-1	구조장소	경주시 석창1길 40-12		
	기타					
K3. 동물정보	종종	고양이	품종	코트	성별	암 / 수 / 미상
	나이	2W	중성화	O / X / 미상	체중	240g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보호동물 사진1(3X4C_m)

보호동물 사진2(3X4C_m)

보호동물 사진3(3X4C_m)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시영호	양호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2018년 1월 4일	[] 빈번 [] 미상 [] 폐사 [] 병사	이름	생년월일	비고
		주수	연락처	
		중성화번호		
		사유	확인자	
		방사장소	확인자	
7. 기타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11.2	시영호	양호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2018년 1월 5일	[] 빈번 [] 미상 [] 폐사 [] 병사	이름	생년월일	비고
		주수	연락처	
		중성화번호		
		사유	확인자	
		방사장소	확인자	
7. 기타				

충북 증평군은 개체관리카드 대신 유기동물 자연사 관리대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통해 자연사한 동물의 건강상태나 폐사 사유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경북 경주시는 보호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전체 개체관리카드 상 누락되어 있었고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기입란에 '양호'라고 대체로 일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일정 기간 후 폐사하는 등 관리기록과 폐사 사유와의 상관관계를 추측하기 어려웠다.

증평군과 경주시 모두 기본 검사는 육안 검사 및 건강 확인 정도로 보호 동물에 대한 치료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생명 유지 수준이었다. 건강관리 또한 진행되지 않아 전반적인 수의학적 처치 수준이 매우 미흡한 지자체들로 확인됐다.

C. 결과분석

신고자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 공개가 가능한 지자체에 한해 개체관리카드를 확인, 자연사율 및 동물치료 현황과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자료상 공통적으로 발견한 문제점은 개체관리카드 내용 및 기록의 부실이다. 개체관리카드를 공개한 128개 지자체 중 기존 개체관리

카드의 양식에 맞추어 동물의 특징, 보호동물의 사진,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폐사 사유 등을 모두 기입하고 있는 곳은 5%도 되지 않았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자연사는 원인 불명 또는 미상일지라도 개체관리카드 상 폐사 사유를 기재하여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자연사하는 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입소 시 또는 보호 중 건강상태와 진료사항 등 개체별 관리는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제공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에는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과 개체관리카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점검 시 개체관리카드의 여부만 확인할 뿐 개체관리카드의 내용이나 문항별 기록의 정도까지는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IV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1. 조사 결과

A. 조사 결과 표

[표 76]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조사 결과

	기본 검사	(응급)치료	기초건강관리	전염성 질병 관리 여부	보호소 환경 및 입소 동물 관리 상황
경산	키트검사 (새끼강아지만)	대증치료	백신접종, 구충/사상충 예방	O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개체 상태 건강
김해	X	X	X	X	사체 방치, 보호장 내·외부 파리 들끓는 등 위생 상태 열악
부산 기장	X	항생제	X	X	묘사의 경우 개체 분리하여 보호 중이며 캣타워 등 시설 구비
세종	필요 시 혈액/항체/ 키트 검사	대증치료	백신접종, 구충/사상충 예방	O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개체 상태 건강
울산 남구	D,F동물병원-X E동물병원-O	D동물병원-X F동물병원- 연고 E동물병원- 주사 등	D,F동물병원-X E동물병원- 인공수유	D,F동물병원-X E동물병원-O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에 수십 마리 동물들 보호·관리
인천 남동/ 미추홀/계양	키트검사	X	X	X	동물 사체가 다른 개체들과 함께 방치
평택	X	X	X	X	배설물 방치로 인한 개체 주변 파리 들끓는 등 위생 상태 열악

B. 조사 주요 결과

(1) 보호소 환경

입소동물이 보호되는 환경과 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관찰했다. 총 11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중 6곳은 위탁 동물병원, 5곳은 위탁 보호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위탁 동물병원보다는 위탁 보호소가 훨씬 더 많은 개체들을 보호·관리 중이었으나 관리 인력은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개체들도 많았다.

경남 김해의 I 보호소의 경우 새끼 고양이 사체 2~3구가 보호장 내에 그대로 방치돼있었다. 활동가가 보호소 관리인에게 방치된 사체에 대해 문자 ‘아직 죽지 않았다’고 답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고양이 보호장 내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았고 보호장 내·외부로 파리 떼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보호소 내부 촬영 금지로 사진 자료 미확보).

인천 남동구/미추홀구의 A 보호소 역시 관리 환경이 열악했다. 철장 내 새끼 고양이 2마리와 사체 1구가 함께 방치되어 있어 이를 지적하는 활동가에게 ‘죽은게 아니니 그냥 빨리 나오라’고 대응하며 별도의 조치가 행해지진 않았다. 철장 곳곳 관리되지 못한 오래된 배설물도 눈에 띄었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C 보호소 역시 배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파리 떼가 들끓는 등 위생 상태가 열악했다.

인천 계양구의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인 B 동물병원의 경우 빈 보호장이 여러 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허피스)이 의심되는 새끼 고양이를 다른 새끼 고양이들과 동일한 공간에 보호 중이었다. 울산 남구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인 D 동물병원, F 동물병원 역시 공간 부족을 이유로 허피스가 의심되는 새끼 고양이를 다른 고양이들과 합사시킨 상태였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대규모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인 G 보호소는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에 수십 마리 개들을 보호 중에 있었다. 보호소 바닥과 철장 곳곳 눌러 붙은 털과 거미줄,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배설물로 인한 악취가 심해 시설 내부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다.

[사진 5] 동물 사체 및 전염성 질환 의심 개체 방치·합사



[사진 6]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에 동물 보호



[사진 7] 비위생적인 보호소 내부 환경



(2) 건강관리

현장조사 중 보호소 내부 직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입소 검사 및 치료 항목, 전염성 질병 관리 여부 등 보호 동물의 건강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11개 보호소 중 경북 경산의 J 보호소와 울

산 남구 E 동물병원, 인천 남동구/미추홀구의 A 보호소, 세종 K 동물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보호소에서는 별도의 입소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호 동물의 치료 역시 조사 대상 보호소에서 대체로 제공하지 않았고, 시행할 경우에도 항생제 처치나 연고 도포 수준이었다. 예방접종, 구충제 급여 등의 기초 건강관리나 새끼 고양이의 생명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공 수유의 경우도 인력 부족의 이유로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현장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된 유기동물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조사 결과와 현장 방문을 통한 내부 직원과의 질의응답으로 파악한 검사 및 치료 등 실제 수의학적 처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황조사 시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는 호흡기질환, 피부병, 상해 등의 치료는 제공한다고 답변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내부 직원은 치료나 건강관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에도 현황조사에서는 선별적 키트검사와 상해 정도의 응급 치료는 진행한다고 답했으나 현장 방문 시 보호소 내부 직원은 어떠한 검사나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 보호소 환경은 더욱 열악했다.

경남 김해 I 보호소는 보호 동물 관찰 중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들이 많았다(토사물도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 울산 남구 지역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인 F 동물병원 수의사는 보호 중인 동물이 아픈 곳은 없는지 묻자 “유기동물은 밥 잘 먹고 배변만 잘하면 돼”, “완벽한 고양이를 원한다면 (펫샵에서) 분양받아야 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반면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조사결과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 세종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인 K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 내 거의 모든 개체가 필요한 내용의 치료를 충분히 제공 받고 있었다. 입소 동물에게 필요 시 혈액 검사, 항체 검사, 키트 검사(파보, 홍역, 사상충 등) 등 기본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예방접종 및 광견병 백신 접종까지 실시했다. 치료 제공 항목도 매우 다양했는데, 골절, 외상, 구더기 등 기본적 대증치료가 시행되고 저체온증과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산소케이지 등을 이용한 응급 치료 또한 제공했다. 새끼 고양이의 경우 하루 3~4번 인공 수유를 하는 등 보호 동물에 대한 건강관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사진 8] 보호소 내 수액 치료 중인 동물



2. 평가

입소 동물의 보호 환경 및 관리 수준을 실제 확인하고자 시행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 조사는 주로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동물 보호 및 관리 부실이 의심되는 주요 보호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호 동물 및 내부 환경에 대한 실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주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A. 인력 및 예산 부족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한 대부분의 보호소는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한대로 보호 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 및 치료, 건강관리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전 현황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점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관리 환경이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고에 맞지 않는 철장에서 수 십 마리 동물들을 관리 중인 보호소가 존재했으며, 동물들을 보호·관리하는 철장 안은 배설물, 토사물이 즉시 치워지지 못해 악취를 유발했다. 보호소 바닥과 철장 곳곳 눌러 붙은 털, 천장과 철장 외부로 거미줄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이미 사망한 동물의 사체가 다른 개체들과 동일한 보호장 내 방치되는 것은 청결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 유지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불결하고 부적절한 관리 환경은 부족한 인력 및 예산과 깊은 연관이 있다. 현황 조사 결과 적절한 동물 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세종시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의 고충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 ‘보호소 운영의 어려움은 인력 및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기준 전국 유기동물 수는 121,077마리,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총 298개소로, 2008년 77,877마리의 유기동물을 411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하던 10년 전에 비해⁴⁾ 유기동물의 수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여 시설 및 운영 인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자연사 및 동물치료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로 시설개보수 등 시설 유지 및 관리 목적으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반면, 실제 보호 동물의 관리 및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재료비 등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그 증가 폭이 높지 않았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입소 동물 보호 및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 「2008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2009.05.22.).

B. 전염성 질병 관리 강화 및 예방책 마련

현장조사 대상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 중 하나는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에 대한 관리 미흡이다. 전염성 질환(허피스)이 의심되는 새끼 고양이를 다른 새끼 고양이들과 동일한 공간에 보호 중인 모습은 다수의 보호소에서 여러 차례 관찰됐다.

수많은 개체가 집단 수용되는 보호소 특성 상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에 대한 격리는커녕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키트 검사 등의 입소 검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동물자유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한 보호소 내부 직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다른 개체에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개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을 통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개체에 대한 격리 수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질병이나 외상으로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보호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함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실이다. 이에 더해 입소 동물 전 개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호소 내 전염병 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운영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V 민간 보호소 운영 사례 :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1.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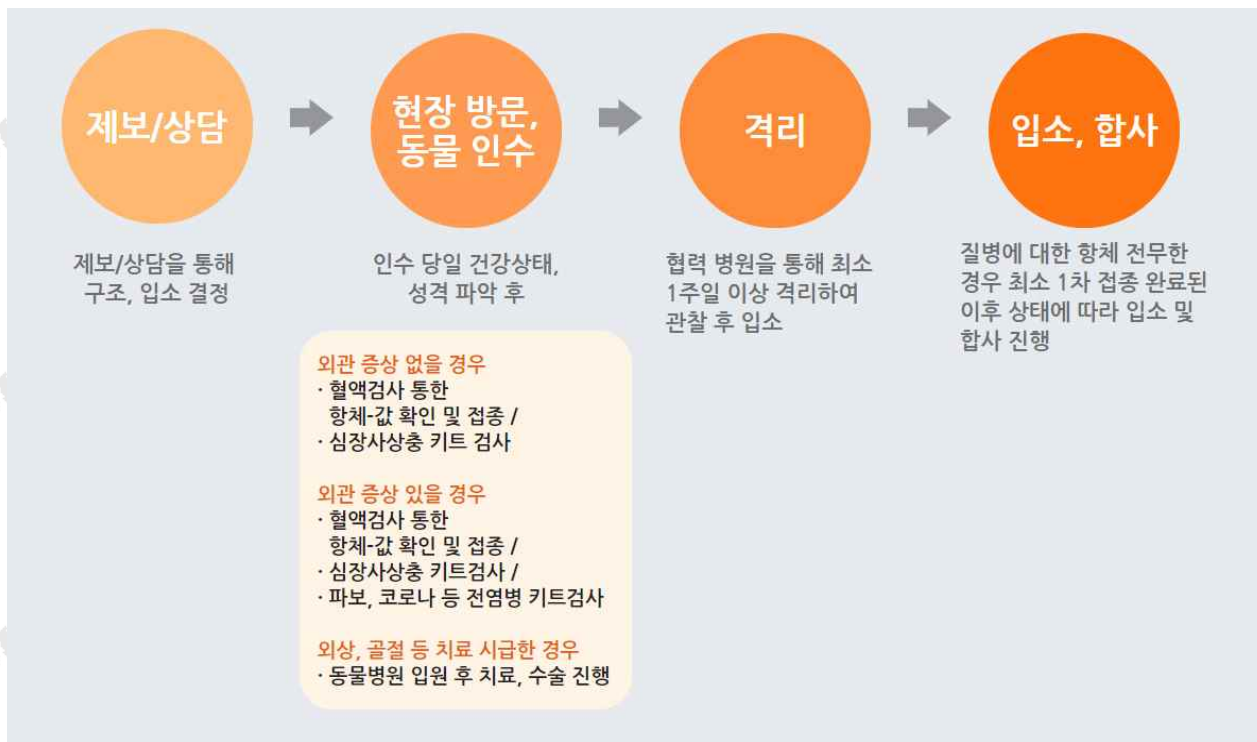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는 과거 동물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생존형 보호소 한계를 극복하고, 학대 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며 구조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3년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선진형 동물복지시스템을 적용한 반려동물복지센터(경기 남양주 소재)를 개관했다.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 및 보호의 질을 개선하고 유기동물의 고통을 경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의학적 처치 기준 마련을 위하여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구조동물 보호 및 관리시스템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은 최대 300마리 수용 가능한 공간에 연간 약 200마리를 구조, 약 150마리를 입양 보내고 있으며 <구조동물 보호 및 관리시스템>에 따라 위기동물에 대한 구조로부터 관리-입양-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입소 직후 센터 내부 동물병원에 개별 등록되며, 입양 확정 시 치료 등 건강관리 내용을 취합하여 입양가족에게 전달하고 입양되지 않은 보호 동물은 관리기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관한다. 주 단위 및 월 단위로 작성되는 구조·보호동물 보고서를 통해 보호 동물 수와 입소, 입양, 파양, 사망 등을 기록하여 센터 보호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 및 보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그림 5]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입소 절차



© 9

	번 호		입소 날짜	2019.06.17
	성 별	암컷	몸 무 게	4.5kg
	생년월일	3살 추정	품 종	코순 Cornish Rex
	중성화여부	유	접종 여부	2차완료
	이 름	구슬	입양 여부	-



- 등록번호 A2019-030
- 현재상태 보호중
- 이름 구조당시 논현이 | 입소 후 **장화** | 입양 후 -
- 종 고양이 (코리안숏헤어)
- 나이 17 살 (2002년01월생) 추정
- 성별 / 몸무게 수컷 / 3.8 kg
- 건강상태 만성 구내염

2. 건강 상태

입소 당시 건강 상태	중증과 수술 부위 <u>미접합으로</u> 복강 내 출혈 발생하여 수혈 후 회복 완료		
심장사상중 검사		심장사상중 치료 종료일	
중증과 수술 날짜	2019.06.10	검종 시작 날짜 추가 검종 날짜	2019.08.23 (1차) 2019.11.07 (2차) 2019.11.28 (3차 예정)

3. 치료 진행 1단계

수술 및 입원 [㉠]	수혈 및 입원 (19/06/11) [㉡]
치료 경위1 [㉢]	TNR 후 복근 보호 중 기적 저하로 내원 [㉣]
치료 경위2 [㉤]	복강 내 출혈 및 빈혈 수치 극저하로 입원 및 수술 진행 [㉥]
치료진행 병일 [㉦]	중성화수술/ [㉧] 혈액 및 초음파검사 등/ [㉨] 입원 및 수혈/ [㉩]

4.치료 진행 2단계

건강 회복 후 접종 필요 (6/11 항체검사 결과 파보3 허피스1 칼리시6)

5. 구조 경위 및 사연

상상십리 인근 길고양이 TNR 진행으로 포획 및 수술 진행.
포획 당시부터 사람 손을 많이 타는 모습. 수술 2일차에 복강 내 출혈 및 빈혈 수치 극저하로
이송 후 수술 처치, 퇴원 및 회복 후 입소 진행.
함께 구조한 치즈 쿼츠 호호, 히히 어미묘.

- 2012/05/17 스텝링, 증정화 수술, 조력, 새군검사 (행*)
- 2012/10/28 추가접종(공헌병)
- 2012/11/09 추가예방접종(종합백신) / 치주염/비염 내복약 1주일 (행*)
- 2013/09/17 스텝링 (호*)

내부 입소동물관리표

홈페이지 보호동물 개체별 관리현황

현재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시민 제보/상담을 통해 구조, 입소를 결정하고 있다. 구조 당시 전 개체 대상 혈액 검사를 통한 항체-값 확인 후 접종 및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를 실시한다(심장사상충 발견 시 치료 진행). 또한 설사, 기침, 눈곱 등 외부 증상 발현 시 파보, 코로나 등 전염병 키트 검사를 추가 진행하고, 전염성 질환의 경우 잠복기간으로 인해 구조 당일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1주 격리 후 2차 검사를 진행한다. 확진 시 즉시 치료를 진행하고 격리 기간을 연장하며, 격리 기간 종료 후 최소 1차 접종이 완료된 개체는 상태에 따라 센터 입소 및 기존 보호 동물과의 합사를 진행한다.

매년 전 개체를 대상으로 종합백신 및 광견병,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며 하절기(5월~10월)는 심장사상충 예방약(내부구충 포함)과 외부구충용 진드기 퇴치제를 투약, 동절기(11월~4월)는 격월로 구충제를 급여한다. 센터 자체 동물병원을 상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체별 건강관리를 지속하고, 관리 동물 중 내부 동물병원 관리 수준 이상의 중증 질환 발견 시 협력 병원을 통해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진행한다.

[사진 10]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보호 공간 및 관리 환경



센터 내 보호 공간은 총 104실로 공간당 평균 2.6마리를 보호 중이며, 실내 생활 기준 마리당 3.3㎡(약 1평) 내외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동물 돌봄 인력의 경우 1명 당 일평균 최소 21.5마리에서 최대 25마리까지 관리를 하며, 쾌적한 보호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하루 평균 4회 이상 청소와 일 1회 소독(청소 도구 포함)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복지센터 보호 동물의 입양은 홈페이지 내 입양신청서 작성 후 1차 선정된 신청자와 2차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예비입양가정의 센터 방문 및 면담을 통해 3차 선정 작업을 거쳐 최종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 담당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동물을 인계하는 것으로 입양이 완료된다.

입양 후 사후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입양 인계 후 1주일 내 / 1개월 내 / 3개월 내 / 1년 내 총 4회를 의무 지정하여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내 입양 후기를 등록하도록 한다. 후기 모니터링을 통해 입양 직후 발생하는 문제 행동에 대하여 상근 동물훈련사가, 질병에 대하여 담당 활동가가 상시 상담을 진행한다. 의무 입양 후기 등록 후 연2회 이상 입양 후기를 등록하도록하며 기간 내 후기가 등록되지 않으면 1차 문자 알림, 2차 전화 확인을 통해 입양 동물의 근황을 파악하고 후기 등록을 독려한다. 또한 입양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반려동물복지센터로 연락, 상담 후 환수 조치하여 재유기 및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2. 시사점

동물자유연대의 구조동물 보호 및 관리시스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입소 동물 전 개체를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한 항체-값 확인이 선행된다는 점이다. 항체-값 검사 후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 진행되며, 구조 시 설사, 기침 등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전염병 키트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전염성 질환의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1주 이상 격리 후 추가 키트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도 보호소 내 전염병 예방 및 관리의 차원에서 눈 여겨 볼만 하다.

특히 센터 보호 동물 대상 기초 건강관리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매년 전 개체를 대상으로 광견병 및 전염성 강한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와 종합 백신을 접종하고 내부 및 외부 구충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투여한다. 또한 자체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개별 보호 동물마다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비해 건강관리가 매우 고수준으로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존엄 보장과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 제공을 위한 보호소 롤 모델을 제시하는 만큼 반려동물복지센터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통해 보호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력 1명당 최소 21.5마리에서 최대 25마리의 동물을 담당하여 타 보호소에 비해 돌봄 인력의 부담은 줄이고 보다 인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호소 내부 위생 및 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물 격리용 케이지 및 바닥 등은 일 4회 이상 청소, 일 1회 소독 작업을 통해 배설물 등의 신속한 처리와 세균 전염을 방지하여 동물 전 개체의 안전한 보호와 청결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동물 생활 공간의 경우 무독성 친환경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 작업하여 보호 중인 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을 고려했다.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은 생존형 보호소의 수준을 넘어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선진형 사설 보호소로, 우리 사회 유실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반려동물복지센터의 동물 보호 절차 또는 치료 수준을 반영하여 보호 동물 전 개체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 보호 및 관리는 생명이 처한 고통을 경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의 운영 사례는 보호소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참고할만하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A. 지자체의 무관심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마주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을 넘어서 무관심이었다.

상당수의 지자체는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사 원인, 입소동물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실시여부,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치료관련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자연사 원인에 대해서는 36개 지자체가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입소동물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12개 지자체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치료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30곳에 불과했다.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체관리카드를 공개한 128개 지자체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서식에 맞추어 동물의 특징, 보호동물의 사진,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폐사 사유 등을 모두 기입하고 있는 곳은 5%도 되지 않았다. 보호동물에 대한 치료비 내역 확인과정에서도 치료비 항목은 물론 예·결산서 자체가 없어 유기동물 보호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곳들도 있었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관련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 남동구/미추홀구는 호흡기질환, 피부병, 상해 등의 치료는 제공한다고 답했으나 보호소 직원은 치료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사체가 보호동물과 같은 케이지 안에 방치되어 있는 관리실태를 감안했을 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어려웠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에도 피부병과 골절에 대한 치료와 응급치료를 실시한다고 답했으나 보호장 내·외부로 파리 떼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경남 김해시도 타박상과 골절에 대한 치료와 응급치료를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새끼 고양이 사체 2~3구가 케이지 내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작성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였다.

2018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을 보면 직영이 31곳, 위탁이 267곳이었다.⁵⁾ 직영과 위탁이라는 보호소 유형으로만 보호환경과 관리수준을 단정할 수 없지만 위탁보호소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동물에게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5) 한 지자체에서 직영보호소와 위탁보호소를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동물구조관리협회와 같이 한 보호소에서 여러 지자체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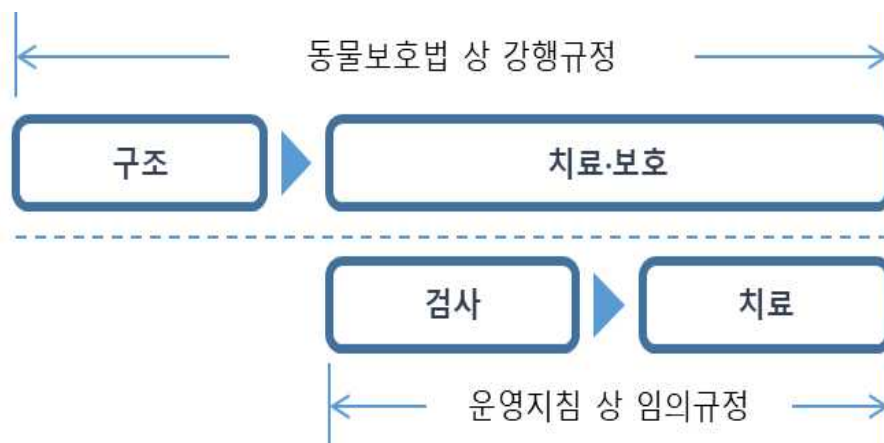
B. 수용 위주의 보호소 운영과 규정 미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보호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인을 잃은 유실동물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래 주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에 유기동물 관련 제보나 문의가 접수되었을 때 선뜻 지자체 보호소로 안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소 입소시 보호자를 찾지 못하거나 입양처를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관리도 보호소를 기피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동물보호법 제3조 제5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사육관리의 기준으로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7조 제2항)고 제시하고 있다.

동법에서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역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공간, 예산,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동물들을 수용만 할 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에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와 제7조에 따른 치료·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규칙상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검사와 치료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혹은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6]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의 검사 치료 조항 비교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소 운영이 길 위의 동물들을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수용’과 ‘처리’에 방점이 찍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유기·유실동물이 보호소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사와 치료, 또는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C. 안락사⁶⁾에서 고통사로의 전환

2016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보에 따르면 2006년 유기·유실동물은 77,877마리로 이중 24,035마리(30.9%)가 안락사 되었으며, 12,395마리(15.9%)가 자연사했다. 10년 후인 2016년에는 전체 유기·유실동물 89,732마리 중 17,824마리(19.9%)가 안락사 되었으며, 22,452마리(25.0%)가 자연사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킬(No-Kill)정책을 선언하거나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안락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줄어든 안락사의 자리는 자연사가 대신하고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기동물 보호소 입소 동물의 절반 가량은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유실동물을 제외한 수치를 제외한 유기동물⁷⁾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더욱 심각하다. 2006년 유기동물의 수는 74,066마리이며, 2016년에는 76,054마리를 기록했다. 유기동물 수 대비 안락사 비율은 2006년 32.4%, 2016년 23.4%였으며, 자연사 비율은 2006년 16.7%, 2016년 29.5%였다. 같은 기간 안락사 비율이 9% 감소한 반면 자연사 비율은 1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보호소 내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부분 자연사 개체가 늘어나고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소 내에서 수명을 다해 죽음을 맞는 개체보다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혹은 그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개체가 많다는 것은 자연사 비율의 증가가 단순히 보호기간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보호소 내 환경 및 관리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의 조사내용과 같이 보호소 내 자연사 개체 중 단 1.7%만이 사인이 고령이라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기·유실동물의 1/4정도를 차지하는 자연사 개체의 대부분이 상해나 질병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 치료나 고통의 경감을 위한 조치를 제공 받은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안락사 비율의 감소는 자연사로 포장된 ‘고통사’로의 전환에 불과하다. 안락사의 감소가 보호소에 맡겨진 유기동물의 삶의 개선과 그들이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았음을 담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과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치료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유기동물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2. 제언

A. 예방 중심의 유기동물 정책 전환

- 6)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나 현재 국내 보호소에서 행하는 안락사(동물보호법 상 ‘인도적인 처리’)의 경우 사전적 정의에 더해 보호기간 종료로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 다만 현재 국내 보호소에서의 인도적인 처리를 안락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 현실로 본 보고서에서도 해당 단어를 사용함.
- 7) 전체 유실·유기동물 중 보호자에게 인도된 유실 개체를 제외한 수치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키울 수 있는 책임감과 역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 기인한다. 동물보호 인식의 확산과는 별개로 마음만 먹으면 펫샵에서 또는 대형마트에서 마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장보듯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또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자체 번식된 동물들이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지인들에게 넘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는 유기동물 정책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무리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쏟아져 나오고, 예산, 인력 등이 제한된 현실에서는 보호소 내 동물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과정부터 정비해야 한다. 2017년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24.3%는 ‘사육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육포기 또는 유기로 이어질 수 있어 입양 전 교육 또는 정보제공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양 전 이론시험과 입양 후 실습 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 역시 반려견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시에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14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펫샵에서 반려동물 판매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방법 역시 인식표 방식은 2021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에서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개나 고양이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여 동물 유기 줄이기 위한 중성화 수술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정책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권장하면서 연간 유기동물 수를 1970년대 15만 마리에서 1990년대 5만 마리까지 줄이기도 했다. LA시의 경우도 2008년 10월부터 4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는 중성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중성화 불이행시 100달러의 벌금과 3회 이상 위반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⁸⁾ 텍사스 주는 유기동물을 입양 보낼 때 의무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무료 중성화 수술도 지원한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돌봄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주는 ‘동물의료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도 했다.

B. 검사, 치료, 예방의 기준 설정

정부의 유기동물 정책은 ‘발생 억제’와 ‘최소한의 복지제공’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도 지

8) 한진수, 2008,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적했듯 현재 지자체 보호소는 발생한 유기동물의 ‘수용’과 ‘처리’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작 그 안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의 삶의 질에는 관심을 쏟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보호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호의 필요가 있는 동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은 아닐지라도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규정은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는 것은 강제하고 있으나, 보호소 안에서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예산과 지자체 사정에 맞춰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별 유기동물의 관리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보호소가 보호 중인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단기간에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고통을 줄이거나 고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 치료, 예방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입소동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신체검사(육안검사 및 촉진검사)조차 222개 응답 지자체 중 57개 지자체가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검사 등 모든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하더라도 상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와 전염성 질병에 대한 키트 검사 정도는 필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34일까지 늘었다. 그만큼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고, 증세가 발현되고, 다른 개체까지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치료에 있어서는 상해와 질병을 구분해볼 수 있다. 상해도 그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처치나 수술 등으로 회복이나 고통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질병은 상해에 비해 대체로 치료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그 기간 또한 길다. 만약 모든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해나 간단한 질병의 경우 회복을 목적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중병의 경우 고통경감을 중심으로 처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해 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표 77] 검사, 치료, 예방의 기준

구분	대상	내용
검사	- 모든 입소 동물	- 신체검사(육안/촉진검사) - 전염병 키트 검사
치료	- 상해 - 빠른 회복이 가능한 질병 - 고통이 수반되는 중증의 질병	- 회복을 위한 치료 및 수술 등 - 고통 감소를 위한 처치
예방	- 일정 기간 이상 체류 동물	-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C. 민관 협력강화 방안 모색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서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의 한계와 전담인력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의 상당부분을 이미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기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유기동물들이 생명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원 마련 및 인력 확보와 함께 둘 사이의 협력, 즉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지자체 보호소가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범사례의 경우 보호소 관리와 운영에 있어 시민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실사례의 경우 봉사자를 받지 않거나 출입하는 봉사자들이 있더라도 먹이 급여와 청소 등 극히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신뢰 형성

민관협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양자 사이의 신뢰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지자체 담당자는 동물보호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막무가내다’, ‘굴치 아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대립의 구조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동물보호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배정되더라도 일정기간만 채우면 자리를 옮겨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민간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력자로 인정하고, 민간은 지자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담당자에 대한 예의 등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민간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보호소 운영과 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여러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는 보호소가 노력을 다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안락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입양에 있어서는 적절한 환경이 아님에도 확인 없이 너무 쉽게 입양을 보낸다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입양 정책으로 입양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만이 공존할 수도 있다.

보호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유기동물 보호소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은 수의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중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은자, 동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원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행규칙상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매 년 1회 이상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보호소 운영 및 동물 보호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3) 통합적 자원활용과 적절한 역할의 배분

유기동물의 보호를 하나의 사회서비스라고 봤을 때 공공(정부와 지자체)과 민간(민간단체와 시민)의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에 한 캣맘으로부터 지자체 보호소에 있는 새끼고양이의 돌봄을 위해 임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캣맘에 따르면 새끼고양이가 보호소에 입소를 했는데 특성상 사망확률이 높아 임시 보호를 요청했으나 지자체에서는 공고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입소 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시민봉사자들이 치료를 위한 임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고집한다거나 입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한다. 이는 규정에 의해 돌아가는 공공의 시스템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충돌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유기동물 보호와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 주체별 역할을 상정해볼 수 있다.

- a. 시민 : 자원봉사를 통한 보호환경 개선 및 개체관리 수준 향상, 임시 보호 및 입양 홍보
- b. 단체 : 치료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일부 동물의 보호, 입양 홍보, 사후모니터링
- c. 정부 : 중앙정부의 재정분담 책임성 강화
- d. 지자체 : 보호환경의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D. 직영보호소 운영 및 전담 인력 배치

과거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는 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후 시대와 시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법제도 정비를 거쳐 정부와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게 되었다. 현재는 조직과 재원을 보유한 공공영역이 구조와 보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민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2018년 현재 전국 298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중 267개(89.6%)가 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31개(10.4%)만 직영이었다. 위탁보호소의 경우 천안시의 사례와 같이 수탁 업체 또는 단체의 사정에 의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운영상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2011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병수)이 수행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에서도 “점진적으로 시설은 정부보조 하에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게 하며, 운영 주체는 직영으로 추진하고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만, 일본처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에서는 모니터링하고 협력하면서 서서히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직영보호소 설치 및 운영 이전에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전담인력의 배치이다.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2018년 더 나은 정책 기획 및 실행을 위하여 분리,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동물복지정책팀’을 임시 설치했다. 이어 2019년에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전담할 과 단위 정식부서를 신설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어 올해 마침내 과단위 부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어 생활경제 관련 부서, 축산관련 부서 등에서 1~2명이 관련 업무를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보호소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연 2회의 점검만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동물 보호를 포함한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이 아닌 현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수행할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수준이 법률로 정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⁹⁾의 걱정한 사육·관리 수준에조차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및 관리 수준이 최소한 법적으로 정한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9)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경우 지자체가 이에 해당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 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동물자유연대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발행일 2020년 2월 10일

발행인 대표 조 희 경

작성자 사회변화팀장 채 일 택

사회변화팀원 서 미 진

사회변화팀원 박 소 연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홈페이지 www.animals.or.kr

전 화 02-2292-6337

팩 스 02-2292-6338

이 메 일 admin@animals.or.kr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발행일 2020년 2월 10일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홈페이지 www.animals.or.kr

전 화 02-2292-6337

팩 스 02-2292-6338